

발 간 등 록 번 호
11-1352000-000174-10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 지침

2022.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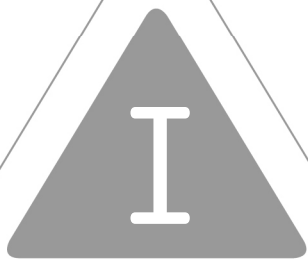
목 차

C O N T E N T S

I. 현지조사 개요	1
II. 현지조사의 종류 및 대상기관 선정	7
III. 현지조사 실시	17
IV. 부당이득금 환수 및 행정처분	31
V. 참고법령 등	61
1. 제재기준	69
2. 서식목록	129
3. 기타 참고자료	161

본 지침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1조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장기요양급여와 관련하여 행하는 자료제출 명령, 질문 및 검사(현지조사)에 필요한 대상 선정, 조사 실시, 조사결과 조치 등의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기 위함





현지조사 개요

I. 현지조사 개요

I

1 개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1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현지조사 주관기관”이라 한다)이 그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기요양기관 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 등에게 질문하거나, 관계서류 검사 등의 방법에 의하여 행하는 현장조사

2 조사목적

- 장기요양기관 운영의 적정성 등 장기요양사업 전반을 관리·감독 (부적정한 경우 경고·지정취소 등 행정처분으로 감독의 실효성 확보)
- 불법·부당행위를 한 장기요양기관을 적발하여 장기요양보험 부담이득을 환수하는 등 장기요양보험 재정 누수 방지 및 수급질서 확립
- 시설운영 및 제공된 급여가 법령 및 각종 고시·기준에 부합되는지 여부 확인 등으로 수급권 보호

3 법적 근거

구 분		현지조사	급여의 제한, 지급보류 및 부당 이득금 환수	행정처분	과징금	과태료 부과	위반사실 공표	벌칙 부과
주체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도지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국민건강 보험공단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법무부
법 적 근 거	노인장기 요양 보험법	법 제61조 시행령 제28조의2	법 제29조 법 제38조 법 제43조 시행규칙 제31조의3	법 제37조 법 제37조의4 법 제37조의5 시행규칙 제29조 시행규칙 제29조의5	법 제37조의2 시행령 제15조 시행령 제15조의2 시행규칙 제29조의4	법 제69조 시행령 제29조	법 제37조의3 시행령 제15조의3, 4,5,6,7	법 제67조 법 제68조
	노인 복지법	법 제42조	-	법 제43조 시행규칙 제31조	-	법 제61조의2 시행령 제27조	-	법 제55조의2,3,4 법 제57조 법 제58조 법 제59조의2 법 제60조
	사회복지 사업법	법 51조	-	법 제40조 시행규칙 제26조의2	-	법 제58조 시행령 제26조	-	법 제54조 법 제56조 법 제57조
	관련법	행정조사가기본법	-	행정절차법	-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	형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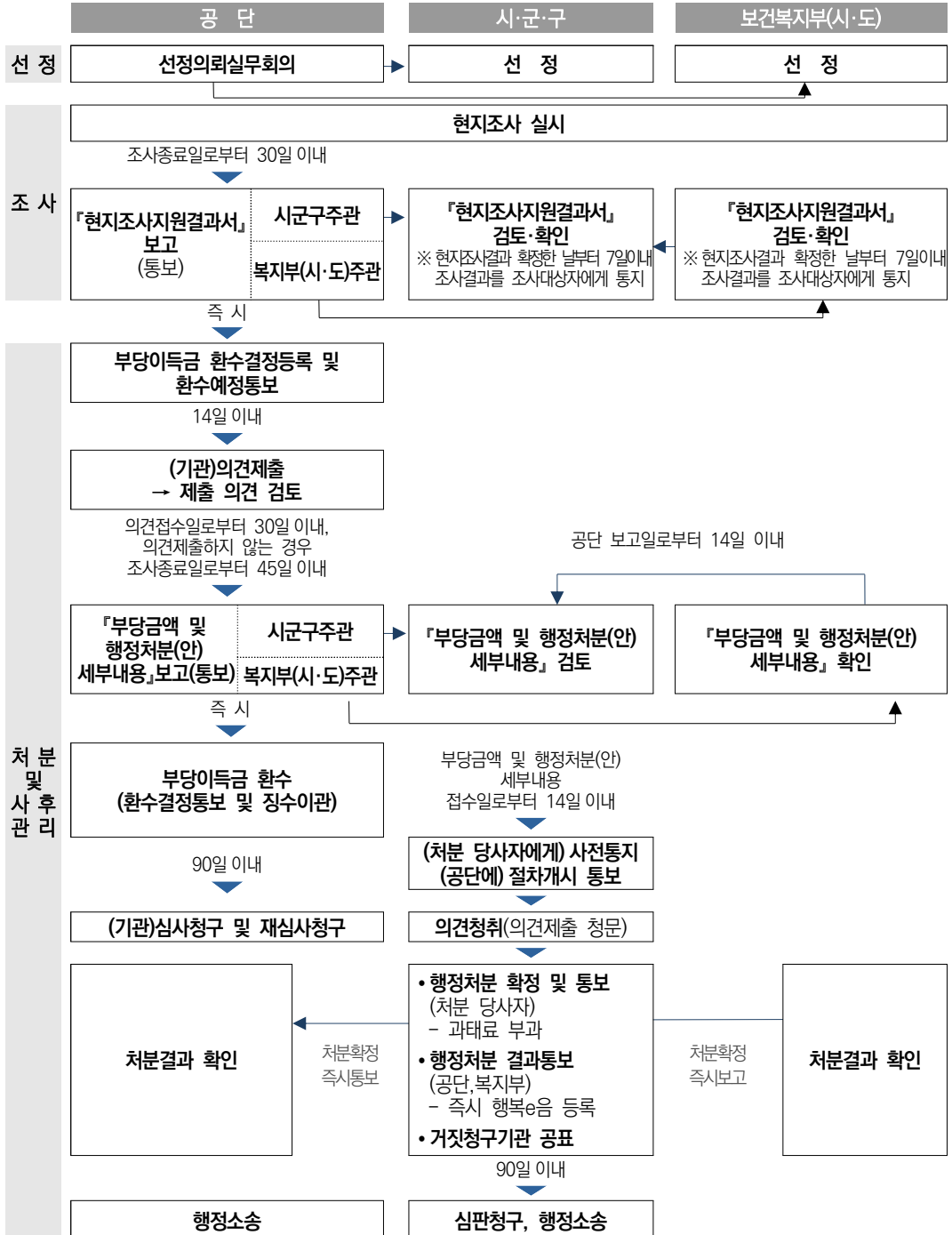
4 조사내용

○ 장기요양기관의 시설·인력기준 등 법규 준수 여부, 장기요양급여 제공 및 비용청구의 적법·타당성 여부 등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제반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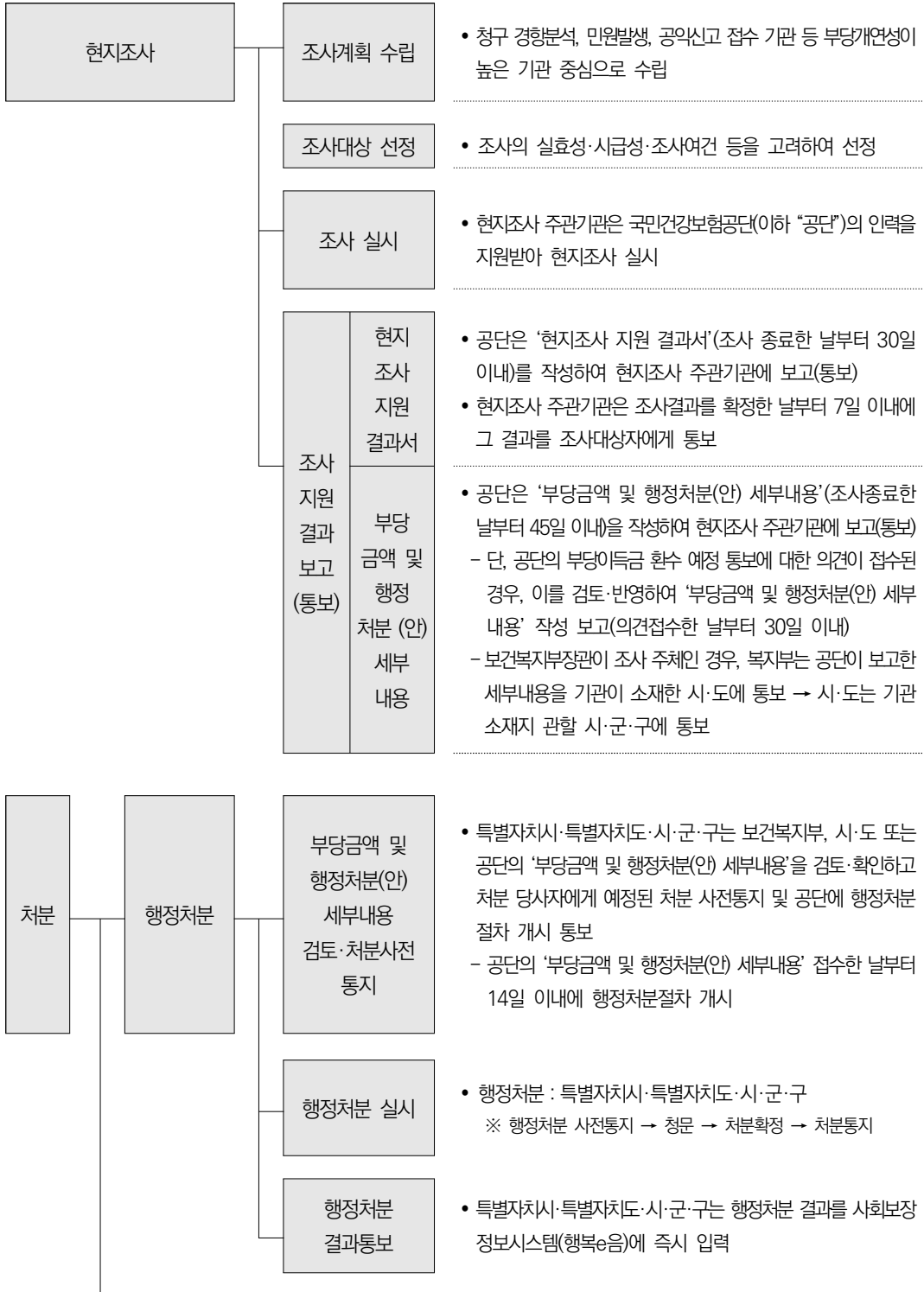
※ 단, 조사대상 기관의 특성이나 사전분석 결과 나타난 부당개연성이 높은 분야 등을 고려하여 특정부분만을 대상으로 조사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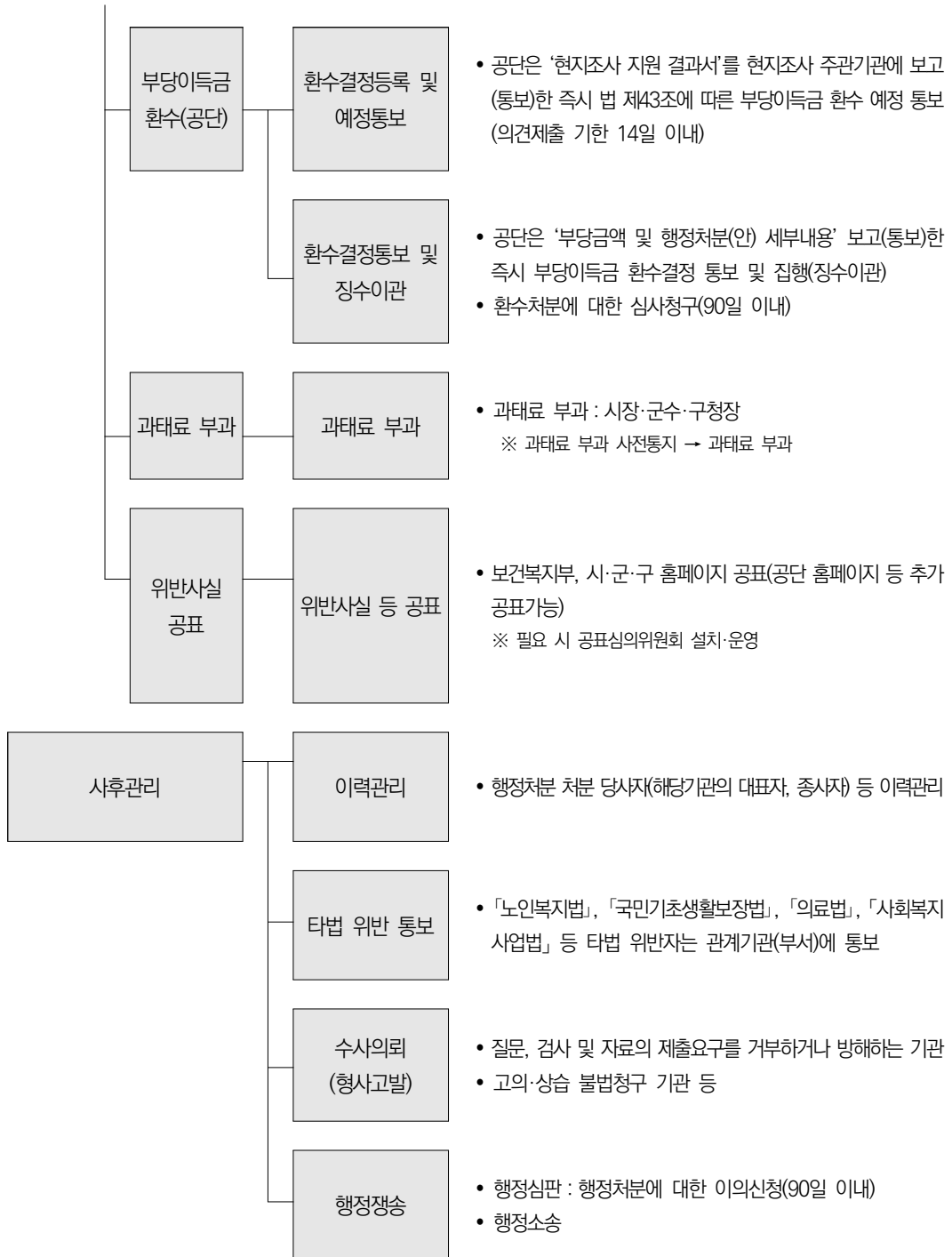
5. 현지조사 업무절차

가. 업무처리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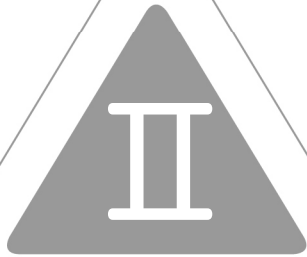


나. 업무처리 절차별 세부내용









현지조사의 종류 및 대상기관 선정

II. 현지조사의 종류 및 대상기관 선정

1. 현지조사 유형

가. 정기(기획)조사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운용상 또는 사회적 문제가 제기된 사안에 대해 제도개선 및 올바른 청구문화 정착을 위해 불법·부당의 개연성이 높은 기관 등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

나. 수시(긴급)조사

-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의 위반에 대한 신고나 민원이 접수된 경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의 위반 혐의가 있는 경우
 - 공단의 급여비용 심사결과, 이용지원 및 급여사후 관리과정 등에서 법령 등의 위반에 대한 혐의가 있거나,
 -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부당청구 등 법령의 위반에 관한 혐의를 통보 또는 이첩 받는 경우
- 사회적 문제가 야기된 사항 중 수급자 보호 등을 위해 긴급조사가 필요한 경우
- 그 밖에 거짓·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조사대상자가 증거인멸 또는 폐업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현지조사 대상 및 대상기관 선정

가. 조사대상

- 장기요양기관 (휴폐업 장기요양기관, 조사대상 연계기관* 포함)
- 장기요양기관의 대표자 및 종사자
-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

* 조사대상 연계기관

☞ 동일법인·대표자 등이 운영하는 기관 간 위법행위 관여 종사자의 이중 근무, 동일한 위법유형 발견 등 연계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기관

나. 조사 대상기관의 선정기준

□ 정기(기획)조사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운용상 또는 사회적 문제가 된 사안을 중심으로 편법 또는 왜곡된 급여청구 행태를 보여 전면적 또는 부분적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분야
- 조사를 통해 문제점과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 이에 대한 대안 제시

□ 수시(긴급)조사

- 민원제보기관(실명의 제보에 한함)
 -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제도를 통해 신고된 기관 중 장기요양기관의 시설·인력운영 등에 관한 불법행위나 급여비용 부당청구 등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와 증거를 제시하는 등 불법·부당의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기관

신고건 처리 제외요건

- ❖ 신고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 ❖ 신고인의 행방을 알 수 없거나 신고인과 연락이 되지 않아 더 이상 조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 ❖ 신고인이 신고서나 증명자료 등에 대한 보완 요구를 2회 이상 받고도 보완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 ❖ 해당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신고의 내용이 신고 이전에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경우
- ❖ 공단이나 다른 기관에서 이미 신고 내용과 관련된 조사 또는 확인이 진행 중이거나 이미 종료된 경우
- ❖ 신고내용에 해당하는 징수금이 시행규칙 별표3에 따른 포상금 지급기준에서 정한 최소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 ❖ 장기요양기관의 폐업, 자료제출 거부 등으로 신고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 신고인이 신고를 취소한 경우

II

○ 긴급조사가 필요한 기관

- 사회적 물의(대표자의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언론보도, 집단민원 제보 등)를 야기한 기관으로서, 수급자의 보호나 증거인멸 또는 폐업 우려가 있어 긴급조사가 필요한 기관

※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는 노인복지상담, 입소관리, 긴급전화 등의 자료를 매월 모니터링하여 시설 인력기준 위반, 장기요양급여 제공거부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현지조사 실시(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2항에 따라 노인학대를 알게된 경우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 특히, 시설·인력 설치 및 변경신고 사항의 이행여부에 대해서는 신고 후 분기별 현장점검을 통해 확인하고, 법령 위반사항 발생 시 행정처분 실시

○ 대외기관에서 조사의뢰한 기관

- 검·경찰청,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노인보호전문기관 등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혐의로 의뢰한 기관으로서 불법행위 개연성이 높은 기관

○ 공단에서 조사의뢰한 기관

- **(급여비용 심사결과 의뢰된 기관)** 장기요양급여비용 심사(현지확인심사 포함) 과정에서 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게 나타난 기관
- **(급여사후 관리결과 의뢰된 기관)** 급여비용 지급 후 공단의 급여사후 관리과정에서 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아 현지조사가 필요한 기관

- (민원제보) 민원발생, 익명신고 등 모니터링 과정에서 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아 현지조사가 필요한 기관
- (자료제출 거부기관) 법 제60조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내용 확인과 관련한 자료제출 요구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기관 등
- 부당이 적발된 기관과 동일법인 또는 동일대표자가 운영하는 기관으로 부당 개연성이 높은 기관

다. 급여비용 부당청구관련 현지조사 선정제외 기준

- 아래의 선정제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조사 대상에서 선정제외

〈 급여비용 부당청구 관련 현지조사 선정제외 기준 〉

선정제외기준
기 실시한 현지조사의 조사 대상기간과 의뢰된 조사 대상기간이 같은 경우. 다만, ① 조사 대상기간이 일부 다르거나 ② 조사 대상기간이 같다고 하더라도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증거를 확보한 경우 재조사 가능 (근거 : 행정조사기본법 제15조, 대법원 2008두10461, 대법원2004두10470판결 등)
신규개설 등의 사유로 장기요양급여비용 총 청구실적이 6개월 미만인 기관. 단, 조사대상 연계기관 등으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조사 가능

라. 대상기관 선정 절차·방법

- 보건복지부,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이하 “현지조사 주관기관”이라 한다)에서 선정
- 조사의 필요성, 시급성 및 과거조사 이력, 장기요양급여비용 등 선정기준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조사여부를 결정

정기(기획)조사 대상기관 선정 절차·방법

- ❖ (복지부)조사 분야 선정 → (공단)선정 분야에 따른 대상기관 분석, 중점 점검사항 확인 → (복지부)조사 대상기관 선정 → (공단)조사 대상기관 선정분석표 작성 → 조사 실시
※ 선정분석표는 선정기준, 중점점검사항, 청구경향, 민원제보 내용 등 포함
- ❖ 기획조사 대상기관은 조사유형별, 시설유형별, 지역별 형평 등을 고려하여 적정 조사비율이 유지되도록 조정

○ 공단의뢰 조사 대상기관 선정

- 공단은 청구경향분석, 민원발생 등 현지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에 대해 현지조사 주관기관에 현지조사 선정의뢰(현지조사 의뢰기관 현황<서식1호>, 현지조사 의뢰기관 선정분석표<서식2호> 첨부)

- 공단은 공익신고(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제도) 접수 기관에 대해 공단 내부 '부당청구 신고건 처리위원회' 회의결과 '현지조사 의뢰'로 결정된 기관에 대하여는, 현지조사 의뢰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현지조사 주관기관에 현지조사 선정의뢰

※ 그 외 공익신고 접수건에 대한 업무처리는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공단 내부 규정)'에 따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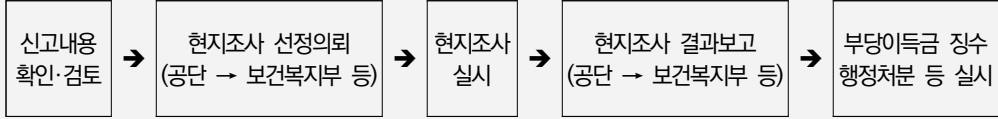
- (민원발생, 공익신고 접수 기관 등) 신고된 위반행위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시행규칙 제29조 [별표2] '행정처분의 기준' 제2호의 가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단 자체확인이 곤란한 경우 장기요양기관 관할 시·군·구에 관련 내용을 문서로 통보. 통보받은 시·군·구는 관련 내용을 검토 후 현장점검 또는 현지조사 실시 등의 관련조치(공단은 시·군·구의 현지조사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 적극 협조)

- 시·군·구는 현지조사가 선정의뢰된 건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4일 이내에 문서로 선정여부 및 선정제외 사유를 공단에 통보

※ 문서상 명시할 사항 : 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조사 관련 사항(조사일시, 조사내용 등), 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구체적인 사유 명시

법 제37조 제1항의 각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건 처리방법

○ 장기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및 그 외 위반행위 복합 신고(공단 처리)



※ 위의 신고가 시·군·구에 접수된 경우 공단에 문서 이첩

※ 복합신고내용 중 노인학대(수급자 폭행 등) 사유로 긴급조사를 요하는 경우 지자체와 협의하여 현지조사 실시 가능

(단, 현지조사가 어려울 경우 해당 지역 관할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이첩필요 내용만 발췌하여 문서 이첩)

○ 장기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이외 위반행위 단일 신고(시·군·구 처리)

구분	세부내용
신고내용 확인·검토 (공단)	- 법 제37조에 따른 위반행위 여부 검토(장기요양급여 비용 부당청구 이외 위반행위에 대한 단일 신고로 판단) ※ 신고내용이 시·군·구에 직접 접수된 경우, 공단의 검토 및 시·군·구 이첩과정 불필요
↓	
시·군·구 이첩 (공단→시·군·구)	신고내용 등 관련서류 문서이첩
↓	
신고내용 확인·검토 (시·군·구)	법 제37조에 따른 위반행위 여부 검토
↓	
처리방법 결정 (현장점검, 현지조사 등) (시·군·구)	- 신고내용 검토 결과에 따른 처리방법 결정 · 현지조사 : 공단에 인력지원 요청 · 현장점검 등 : 시·군·구 단독 점검
↓	
현장점검, 현지조사 등 실시 (시·군·구, 공단)	-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 현지조사 : 공단에 조사인력지원 요청 후 실시
↓	
현지조사지원결과보고 (공단→시·군·구)	현지조사 지원 결과보고(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
↓	
부당이득금 징수, 행정처분 등 실시 (시·군·구, 공단)	현지조사 결과 및 현장점검 결과에 따른 부당이득금 징수 및 행정처분 등 실시

※ 장기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이외 위반행위 단일 신고 주요사례

- 수급자 유치 등과 관련하여 종사자 등에게 인센티브 제공 등을 약속하거나 지급하는 경우
- 요양보호사에게 수급자의 본인부담금을 전가시키는 경우
- 본인부담금에 대한 안내 없이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납부를 요구하지 않거나 면제 또는 감면해주는 경우
- 수급자에게 비급여대상의 비용을 면제·할인하는 경우
 - ※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나 빈번히 정기적·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위반소지가 있음
- 수급자의 신체에 대한 폭행, 상해를 입히는 행위, 성폭행, 수급자를 유기·방임하는 경우





현지조사 실시

III. 현지조사 실시

1 조사준비

가. 조사계획 수립

- 현지조사 주관기관은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적절한 조사계획을 수립

조사계획서 포함사항(행정조사기본법 제16조 및 시행령 제10조)

- ❖ 조사의 목적·종류·대상·방법 및 기간
- ❖ 조사의 근거, 조사원의 구성, 조사대상기관의 선정기준, 조사거부 시 제재의 내용 및 근거

- 정기(기획)조사는 연 2회 이상, 수시(긴급)조사는 조사가 필요한 시점에 수립
 - (정기(기획)조사) 보건복지부장관이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시·도를 통해 시·군·구에 통보하며 현지조사 주관기관이 조사주체로서 조사 실시
 - (수시(긴급)조사) 현지조사 주관기관이 각각 계획을 수립하여 조사 실시
 - ※ 조사의 시급성으로 조사계획 없이 수시조사를 하는 경우 결과보고서로 조사계획을 갈음
 - ※ 근거 : 「행정조사기본법」 제16조(개별조사계획의 수립)
- 공단은 현지조사 주관기관의 현지조사 계획 수립 단계부터, 대상선정, 조사실시, 정산심사 및 처분 등 현지조사 관련 제반업무에 인력·자료 등 필요한 사항 지원

나. 조사반의 편성 및 사전교육

① 조사반의 편성

- 현지조사 주관기관은 공단으로부터 전문인력을 지원받아 현지조사반을 구성하되 조사반의 인력은 4명을 원칙으로 함
 - 현지조사의 종류, 장기요양기관의 특성(급여종별, 청구건수 및 금액 등), 조사 대상기간, 선정사유 등에 따라 조정 가능
 - ※ 노인학대 등 사안에 따라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관련기관 전문가 활용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단의 인력을 지원받아 조사를 실시하며,
 - 공단의 전문인력은 조사계획 수립, 대상선정, 조사실시, 급여비용 정산심사 및 처분 등 현지조사의 제반업무에 지원

행정기관의 공단인력 파견요청 절차

- 공문으로 파견 요청하되 다음 사항을 명시
 - 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1조제3항
 - 비용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기 확보된 현지조사 관련 예산 사용
 - 인원 : ○명(조사 대상 기관 특성에 맞게 3~5명 등으로 표시 가능)
 - 파견기간 : 4일[18.○.○~○.○](단, 조사가 연장될 경우 파견기간 연장)

- 조사반은 현지조사 주관기관의 조사담당자를 반장으로, 공단의 선임자를 조사팀장으로 하여 수행
- 조사요원의 제척·기피
 - 조사요원이 장기요양기관 대표자 등과 친인척 관계에 있거나, 조사 대상기관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학연·지연 등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기타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등은 해당 기관 조사반 편성시 제외

② 조사인력 사전교육

- 조사업무 수행과 관련된 기준 변경 내용, 중점조사항목 등 제반사항
- 조사 대상기관에 대한 응대태도, 조사관련 절차 및 규정 준수, 친절교육
- 금품·향응수수 금지 등 청렴서약서 준수 및 부패방지·공직기강 확립 관련 사항
- 조사 관련 사전정보 누설 금지 및 조사 과정에서 취득한 장기요양 기관과 수급자에 대한 일체의 정보 비밀유지 등
- 공익신고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및 비밀누설로 인한 불이익, 위반 시 처벌사항 등 사전 예방 사항
- 기타 조사업무 수행과 관련된 중요 사항

다. 조사기간 및 조사 대상기간 설정

① 조사기간

- 현지조사기간은 기관 당 4일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조정 가능
 - ※ 장기요양기관의 특성(급여종별, 청구 건수 및 금액 등) 및 조사 대상기간, 선정사유 등에 따라 조사계획 수립 시 적절한 조사기간으로 조정 가능

② 조사 대상기간

▶ 정기(기획)조사

- 정기(기획)조사는 현지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지급된 최근 6개월 급여제공분에 대한 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 조사과정 중 거짓·부당청구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현재 조사 시점에서 최근 지급된 장기요양급여 제공분을 포함하여 최대 36개월 범위 내에서 발생 시점까지 소급하여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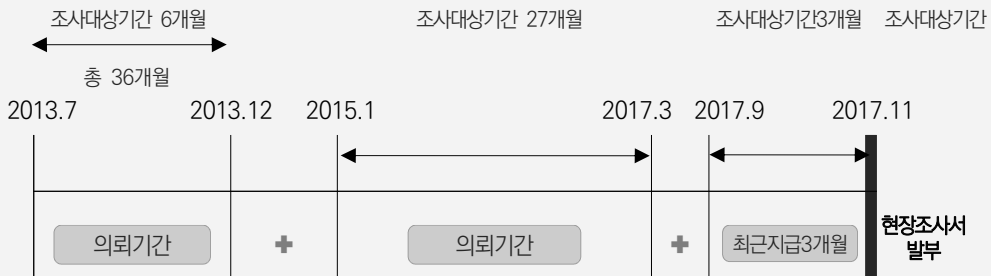
▶ 수시(긴급)조사

- 수시조사 기간은 조사선정 사유 등을 감안하여, 부당개연성이 있는 기간과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지급된 3개월의 장기요양급여제공분을 포함하여 최대 36개월 범위 내에서 대상기간을 선정
- 긴급조사는 수시조사에 준하여 조사 대상기간을 정하되, 검·경찰 등 대외기관에서 의뢰한 장기요양기관은 수사범위 등 문제가 야기된 기간을 판단하여 동 기간과 최근 지급된 3개월을 포함하여 36개월 범위 내에서 조사
- ※ 긴급조사 : 거짓·부당청구 혐의가 있는 장기요양기관이 증거인멸·폐업 등의 우려, 사회적 물의 야기, 기타 장기요양보험 급여비용 청구 등과 연계하여 긴급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실시

공단의회 기관에 대한 조사 대상기간 선정 시 유의사항

- ❖ 장기요양급여비용이 지급된(이하“지급된”) 기간 중, 부당개연성이 있는 기간(의뢰기간)과 현장조사서 발부일 기준으로 최근 지급된 3개월 급여제공분을 포함하되, 타당성·객관성을 상실하거나 조사 실익이 없는 기간은 제외하고 최대 36개월의 급여제공분을 조사대상기간으로 함

〈 예 시 〉



- ❖ 의뢰기간과 최근 지급된 3개월 급여제공분 사이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당해 기간은 조사 대상기간에 포함
- ❖ 의뢰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의뢰기간 이전 급여제공분을 합친 3개월과 최근 지급된 3개월 급여제공분을 조사. 단, 의뢰기간 이전 지급된 급여제공분이 없는 경우에는 의뢰기간 이후 급여제공분을 합친 3개월과 최근 지급된 3개월 급여제공분을 조사
- ❖ 의뢰기간과 최근 지급된 급여제공분이 중복될 경우 의뢰기간과 최근 지급된 급여제공분을 합친 급여제공분을 조사
- ❖ 의뢰기간에 연속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경우, 불연속 구간 사이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그 사이 기간을 포함한 급여제공분을 조사

- ❖ 조사과정 중 다음의 거짓·부당청구가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현장조사서 발부일 기준으로 최근 지급된 3개월의 급여제공분을 포함하여 발생 시점까지 소급하여 조사하되, 타당성과 객관성을 상실하거나 조사실익이 없는 기간은 제외하고 최대 36개월의 급여제공분을 조사
 - 고의적 또는 지속적 거짓·부당청구가 확인된 경우
 - 무자격자 또는 요양요원(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 치료사, 요양보호사 등) 등 시설관계자의 거짓신고 등에 의한 부당청구가 확인된 경우
 - 2개 이상 장기요양기관의 담합 혹은 공모에 의한 조직적 거짓·부당청구가 확인된 경우
- ※ 의뢰기간과 최근 지급된 3개월 급여제공분을 합하여 36개월을 초과한 경우, 의뢰기간 중 초과된 월을 조사 대상기간에서는 제외하되, 그 해당월은 현지조사에서 부당청구 여부를 확인하고, 부당청구금액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환수하도록 조치
- ❖ 의뢰기간 중 일부 월에 일부 급여제공분은 지급하고, 일부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월을 조사 대상기간에 포함하여 조사

2. 현지조사 진행

가. 현지조사의 통지 및 착수

- 현지조사 주관기관은 조사개시 7일 전까지 ‘현장조사서’ 및 ‘장기요양급여 관계서류 제출요구서’를 조사대상자(장기요양기관 대표자 등)에게 서면으로 통지
 - 사전통지 가능 건: 정기(기획)조사 건(단, 인력을 허위로 등록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제외), 배상책임보험 미가입건, 현지확인심사 중 현지조사 전환건 등
 - 다만, 증거인멸 우려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사개시와 동시에 조사대상자(장기요양기관 대표자 등)에게 대면(對面)하여 서면 또는 구두의 방법으로 통지
- ※ 근거 : 「행정조사기본법」 제11조1항 및 제17조제1항
- 현지조사 시 조사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
 - ‘현장조사서(서식 3호)’의 소속 공무원은 신분증, 소속 기관장 직인이 날인된 현장조사서(원본 또는 사본) 및 ‘장기요양급여 관계서류 제출요구서 등’ 제시

- 조사목적, 조사기간·장소, 조사자의 성명·직위, 조사범위와 내용, 제출자료, 조사거부에 대한 제재(근거법령 및 조항 포함), 그 밖에 현지조사 관련 필요한 사항을 장기요양기관 대표자 등에게 구두의 방법 등으로 사전 설명

※ '현장조사서(서식3호)'에 조사목적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함.

예시 시설·인력기준, 주야간보호 기준, 방문요양 서비스 제공기준 등 준수 여부, 장기요양급여 제공 및 비용청구의 적법·타당성 여부 확인

나. 현지조사의 내용 및 방법

① 조사내용

- 장기요양기관의 시설·인력기준 등 법규 준수 여부, 장기요양급여 제공 및 비용청구의 적법·타당성 여부 등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제반 사항

※ 단, 조사 대상기관의 특성이나 사전분석 결과 나타난 취약부분 등을 고려하여 특정 부분만을 대상으로 조사 가능

① 기본항목	○ 장기요양기관의 시설, 인력 및 수급자 현황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장기요양기관 지정기준 등) 관련하여 장기요양기관의 시설·인력기준'의 개별항목을 점검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등)제1항 관련 [별표4]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의 개별항목을 점검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등)제1항 관련 [별표9]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의 개별항목을 점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장기요양기관의 의무 등) 제4항의 장기요양급여 관련 서류의 기록·관리 여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 제1항 각 호 위반 여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9조(과태료)제1항 각 호 위반 여부 ○ 자격·면허증 대여 등 관련법령 노인복지법제39조의14(요양보호사 자격의 취소), 의료법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의료법제80조의3(준용규정),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제21조(면허의 취소 등), 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의3(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등), 국민영양관리법제21조(면허취소 등) 위반 여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의5(장기요양급여 제공의 제한) 제1항 위반 여부
---------------	--

②장기요양 급여비용 관련

- 급여제공기록지 및 관련 자료, 청구된 장기요양급여비용에 따른 실제 서비스 제공여부 등 장기요양급여비용의 부당청구 유무(허위, 증일, 대체, 수가 산정기준 위반 청구 등)
- * 미신고인력의 급여 제공, 허위 종사자의 급여 제공, 신고 인력의 서비스 허위·증일 청구 등 확인을 위해 필요시 인건비 지급 등 인사·급여·회계 등 관련 증빙자료 점검(노인의료복지시설의 경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5] 노인 의료복지시설의 운영기준 6. 장부 등의 비치”에 따른 구비서류, 재가노인복지 시설인 경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0]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기준 4. 장부 등의 비치”에 따른 구비서류 포함)
- ** 위반행위 발생 시 노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련규정 위반여부 적용
- 기타 탈법적 방법에 의한 급여비용 청구 행위 여부

② 조사방법

① 조사의 착수(현지조사 실시 중 조사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

- 조사개시와 동시에 조사대상자에게 조사자가 ‘현장조사서’ 등에 기재된 성명과 동일인임을 나타내는 증표(공무원 신분증 등), 보건복지부장관 등의 직인이 날인된 ‘현장조사서(원본 또는 사본)’,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안내문’, ‘장기요양급여 관계서류 제출요구서(원본 또는 사본)’ 등 제시
- 조사개시 전 조사대상자에게 현지조사의 이해, 권리구제제도 안내 등의 내용을 담은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안내문(서식 4호)’을 교부하고, 필요한 사항을 조사대상자에게 사전 설명한 후 현지조사 동의 또는 거부 의사 확인
- 조사대상자가 조사를 거부할 경우 행정조사 명령위반 등에 따라 예상되는 불이익 등에 대해 안내
- 조사대상자가 조사를 최종적으로 거부할 경우 이에 대한 사실확인서 등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확보

② 각종자료 및 사실관계 확인

- 장기요양기관의 인력·시설 등의 현황,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 등 법정 보존의무서류 및 기타 급여비용 청구 근거자료 등을 확인
-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시설·인력기준, 장기요양 급여비용 청구내용 등 장기요양급여제공 관련 사실관계 확인

- 시설·인력기준 등과 관련하여 필요시 관계법령(노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등)에서 규정한 기록관리 자료와 부합여부 등 사실관계 확인
- 현지조사 중 사실관계에 확인이 필요할 경우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와 수급자 등 관계인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질문하여 사실관계를 검토하고, 사실확인서 등 객관적 자료 확보

※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1조

- 조사원과 조사대상자는 조사과정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현지조사의 과정을 녹음하거나 녹화할 수 있으며, 녹음이나 녹화를 하는 경우 사전에 해당 당해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

※ 근거: 「행정조사기본법」 제23조 제3항, 제4항

③ 자료영치

- 조사대상자 또는 그 대리인 등 장기요양기관 관계자 입회하에 ‘영치조서(서식 12호)’ 2부를 작성, 입회인과 함께 서명날인하고 1부를 입회인에게 교부
- 영치 자료 검토 결과 당해 조사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현지조사의 목적 달성 등으로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반환 조치

※ 근거: 「행정조사기본법」 제13조제3항

- 조사원은 조사 대상기관의 업무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자료 등을 사진촬영 또는 사본으로 갈음. 다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원본을 영치

④ 확인내용의 설명 및 확인서 징구

- 조사팀장은 조사결과에 따른 개괄적 부당내용 등 조사기간 동안 확인한 내용을 조사대상자에게 설명
- 조사반은 현지조사 기간 동안 확인한 모든 내용을 종합하여 조사대상자로부터 ‘확인서(서식 11호)’에 서명날인을 받음
- 확인서에는 조사 대상기간, 불법행위, 부당청구 내용 등을 기재하고, 부당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
- 조사대상자가 확인서의 작성·날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확인서에 날인거부 사실을 기재하고, 확인한 내용을 관계 공무원 또는 현지조사 팀장(원)이 기재한 후 조사자 전원이 연대하여 서명

- 현지조사를 거부하거나 관계 자료를 미제출하는 등의 조사대상자에 대해서는 조사명령위반 등에 대한 제재조항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하고, ‘장기요양급여 관계서류 제출요구서(서식 10호)’에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은 후 “자료제출명령위반”에 대한 확인서 징구

※ 「장기요양급여 관계서류 제출요구서」 서식에 서명 또는 날인 거부 시 확인서 날인 거부한 경우와 동일한 방법에 따라서 처리

- 조사에서 확인된 내용이 노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의료법 등 타법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종사자 등 관련자에게 확인서 별도 징구(책임소재 명확화)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제1항제5호: 조사거부·방해, 기피시 행정처분기준 (붙임1 참조)

※ 다음의 예시와 같이 현지조사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사실확인서 확보 또는 당시 상황 녹화·녹음 등 증거 확보 후 조사반장 및 조사원들의 연대서명으로 같음

- 대표자가 명시적으로 조사거부 의사를 밝힌 경우
- 대표자 또는 종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기관 출입을 막거나 조사자의 검사·질문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 또는 협박 등의 위력을 가하여 조사자를 압박하는 경우
- 관계서류 제출을 지연하여 조사기간 내에 정상적인 조사진행을 어렵게 하는 경우
- 기타 다른 방법으로 조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 질수 없도록 하는 경우 등

다. 조사 대상기간 변경신청 등

○ 조사 대상기간의 변경 등

- 조사팀장은 당해 조사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조사 대상기간, 조사인력 및 조사(출장)기간의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조사종료일 전까지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하여 ‘현지조사 주요 변경사항 신청서(서식 8호)’를 작성하여 현지조사 주관기관에 보고(통보)

※ 조사 대상기간, 조사기간, 조사인력 변경은 현지조사 주관기관의 사전 승인 필요

- 현지조사 주관기관은 변경요청 사안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할 때 ‘현장조사서’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현장 상황에 대한 구체적 판단(조사 대상기간 등 변경의 타당성 있는 근거확인 등)을 거침
- 소속 공무원의 현장상황 확인 등을 거쳐 조사 대상기간 등 주요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행정관청은 ‘현지조사 주요변경사항 통지서(서식 9호)’를 발행하고,

- 조사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은 기관장 직인이 날인된 ‘현장조사서’, ‘장기요양급여 관계서류 제출요구서’ 등에 변경사항 및 조사반 전원의 성명을 명확히 기재하여 재발행하여야 하며,
- 조사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이 조사현장에서 주요변경사항을 조사 대상자에게 설명하고 서명을 받음. 다만, 예기치 못한 출장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메일·팩스 등으로 조사팀장에게 관련 자료를 송부하여 조사팀장으로 하여금 조사대상자에게 설명

※ 조사인력 내에서 조사팀장을 변경하는 경우, 구두로 조사대상자(장기요양기관의 대표자 등)에게 통보

3. 현지조사의 연기

○ 조사대상자가 다음의 사유로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서면요청(서식 5호)을 통한 조사 연기 가능

- 천재지변, 화재 또는 재해 등으로 조사수행이 어려운 경우
- 장기요양기관 대표자의 질병·해외체류 등으로 조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단, 대리인에게 위임 가능한 경우 연기대상에서 제외

- 권한 있는 기관(수사기관(검찰청, 경찰청) 등)에 관련 장부·증빙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되어 자료의 열람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

-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

※ 단, 증거인멸, 자료의 위·변조 등에 대비하여 필요시 조사자료 우선 징구 가능

※ 근거 : 「행정조사기본법」 제18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 현지조사 주관기관은 현지조사의 연기요청을 받은 때에는 7일 이내에 조사의 연기 여부를 결정하여 조사대상자에게 통지(서식 6호)

○ 현지조사 연기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조사(서식 7호)를 시작

- 다만, 연기기간이 종료되기 전이라도 연기사유가 소멸되었거나 증거인멸 우려 등 긴급히 조사를 실시하여야 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현지조사 재개통지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조사대상자에게 통지(서식 7호)후 현지조사 시작 가능

4 현지조사 진행상황 및 결과보고(통보)

- 현지조사 진행상황 보고(통보)
 - 조사팀장은 주요 조치사항, 특이사항 등이 있는 경우 당일 일과 중 보건복지부 등에 서면보고하되, 긴급보고, 원격지 조사 등 불가피한 경우 유선 등으로 대체 가능
- 조사팀장은 현지조사를 종결하기에 앞서 의뢰사항의 누락 여부 등 조사가 철저히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반드시 확인
- 현지조사에서 확인된 타 법령 위반사항 및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등 제도개선사항, 장기요양기관의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여 조사결과 종합보고 시 별도 항목으로 작성 보고(통보)
 - 시·군·구 주관 조사 : 공단 → 시·군·구(제도개선 등 공통적 사안인 경우 시·도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에 별도로 보고)
 - 보건복지부 주관 조사 : 공단 →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주관 조사의 경우 조사팀장은 현지조사가 종료된 후 ‘현지조사 지원 결과서’의 실적통계 및 관리 현황을 정확히 확인한 후 보건복지부에 보고
 - 조사거부, 폐업(조사 실익이 없는 경우에 한 함), 조사유예 등 구분을 명확히 함
- 공단은 ‘현지조사 의뢰에 따른 현지조사 실시 현황’을 반기별로 보건복지부에 보고
 - 선정의뢰 현황, 조사 선정·제외 현황, 선정제외 사유, 행정처분 실시 현황 등을 포함하여 보고
- **(현지조사 결과의 관리)** 시·군·구에서는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의 “장기요양기관 관리 메뉴”를 통해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 실시현황’ 자료를 입력·관리
- **(현지조사 관련 자료의 보관)** 현지조사자료 일체(단, 부속서류 제외)는 현지조사 주관기관(보건복지부 등)이 보관하며 공단은 사본 보관
(단, 공단과 업무협의를 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단이 원본자료 일체 보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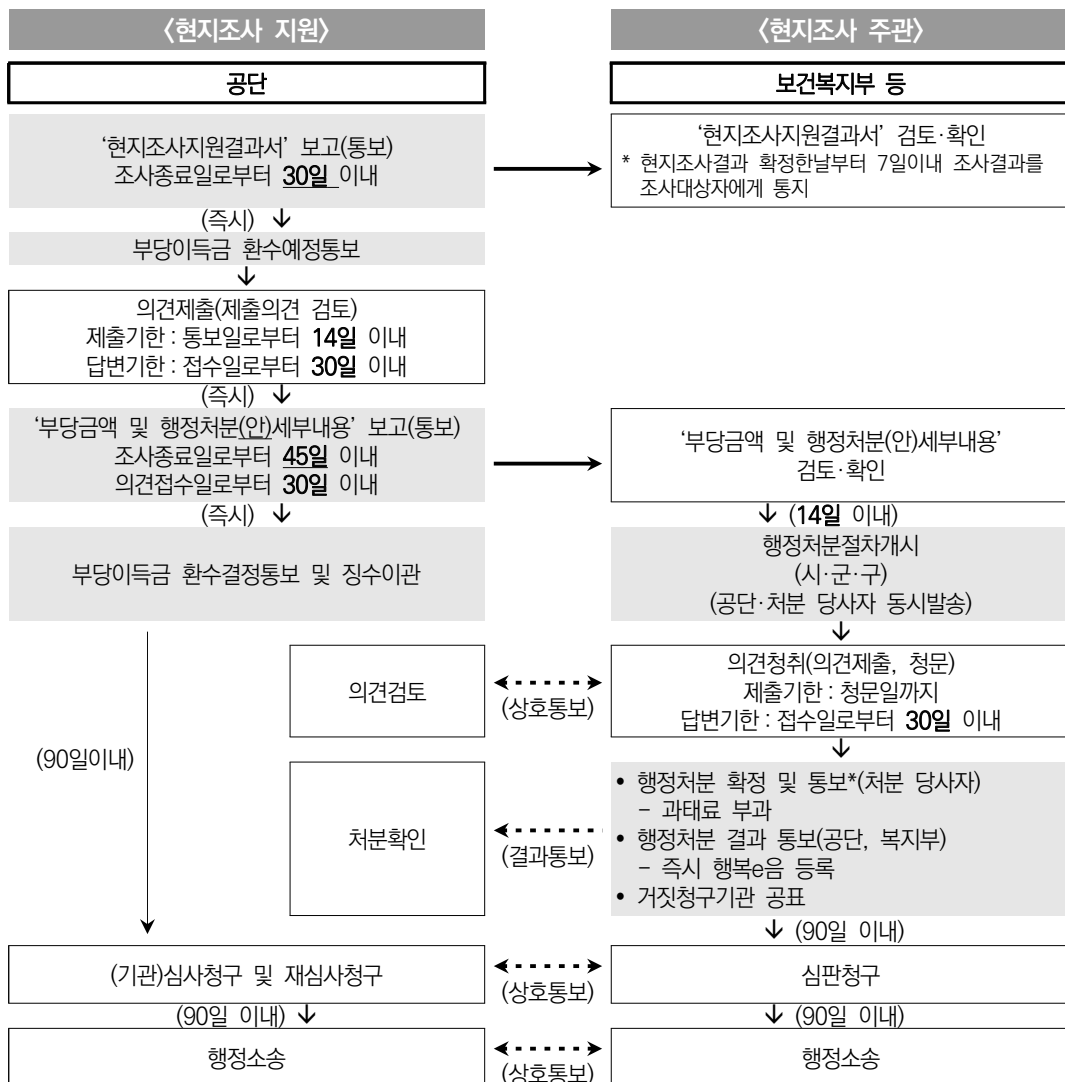




부당이득금 환수 및 행정처분

IV. 부당이득금 환수 및 행정처분

1 업무처리 흐름도



※ 공단의 부당이득금 환수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재심사청구·행정소송 등이 접수되었을 경우 공단·지자체간 상호통보하여 의견교환 후 행정처분 시기에 대한 최종 판단은 시·군·구에서 할 수 있음

2 행정처분 등 산출

가. 행정처분 산출

○ 행정처분 산출 방법

- 장기요양기관(기관기호) 단위별 부당금액(본인부담금, 공단부담금) 및 부당비율, 월평균 부당금액, 거짓청구 금액 및 비율, 부당금액 이외 시설·인력기준위반 등 법령 위반사항 등을 확인·산출

○ 행정처분 적용기준

- 시행규칙 제29조 [별표 2] ‘행정처분의 기준(붙임1)’에 따라 위반행위별, 최종 위반행위 발생일*을 기준으로 행정처분 적용

* 위반행위 발생일 :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일 기준

○ 행정처분 일반기준

- (위반행위의 횟수) 최근 5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
 - 기준 적용일 : 행정처분을 한 날과 그 행정처분 이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위반행위의 횟수를 계산

※ 2014.2.14.이전 별표2 행정처분기준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2014.2.14.이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 부당청구 : 1차 위반 시의 행정처분 기준 적용
- 부당청구 이외 위반행위 : 2차 위반 시의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
 - 관련근거: 시행규칙 부칙<제232호, 2014.2.14.> 제2조(행정처분기준의 변경에 관한 경과 조치)제2항

※ 2020.10.1. 이전에 별표 2 행정처분기준 제2호나목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2020.10.1. 이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 1차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 1차 위반 시의 행정처분 기준 적용
- 2차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 2차 위반 시의 행정처분 기준 적용
 - 관련근거: 시행규칙 부칙<제752호, 2020.9.29.> 제3조(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

-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 무거운 처분기준 적용(부당청구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업무정지인 경우는 제외)

※ **예시** '경고 / 업무정지' → 업무정지

- 처분기준이 동일한 업무정지일 경우, 6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업무정지 기간을 합산하여 처분(부당청구 제외)
- 부당청구를 포함한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업무정지인 경우, 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부당청구에 대한 처분기준 우선적용, 나머지 기간의 범위에서 업무정지 기간 합산하여 처분

- (위반행위가 중대한 경우로서 지정취소를 할 수 있는 경우)

-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 등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처분기준을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장기요양기관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지정취소를 할 수 있는 경우)

- 처분할 위반행위가 4종 이상인 경우
- 처분할 위반행위가 다음의 행위 중 2종 이상인 경우

- 수급자의 신체에 대한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 수급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
-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수급자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 수급자를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수급자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 (처분의 감경)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업무정지처분인 경우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정도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1/2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으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

- 거짓으로 급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한 경우

-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제출을 한 경우나 질문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경우

○ 행정처분의 개별기준

-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기준)

-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법 제37조제1항제4호 제외)

- (장기요양기관이 법 제3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기준)

- 법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로 부당청구액의 비율과 월평균 부당금액에 따른 업무정지 일수

■ 부당청구액의 비율(%)

$$= (\text{대상기간의 총 부당금액} / \text{대상기간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총액}) \times 100$$

※ 장기요양급여비용 총액은 조사대상기간에 공단이 심사결정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의 합산 금액으로 한다. 다만,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가 없어 심사결정 총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총 부당금액을 장기요양급여비용총액으로 한다.

■ 월평균 부당금액

$$= (\text{대상기간의 총 부당금액} / \text{대상기간의 월수})$$

-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에 대한 기준)

- 법 제37조의5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급여비용 또는 시설급여비용을 청구하는 행위에 가담한 경우 급여제공의 제한 처분

❖ 부당청구 가담종사자의 정의

- ① 종사자가 장기요양급여제공자료*를 거짓 작성하는 경우
 - * 장기요양급여제공자료 : 급여제공기록지, RFID 태그 등
- ② 종사자가 장기요양급여제공자료를 거짓 작성하도록 지시하는 경우
- ③ 종사자가 장기요양급여제공자료를 근거로 거짓 청구하는 등 청구담당자로 부당청구 하는 경우
- ④ 그 밖에 부당청구행위에 가담한 경우라고 판단되는 경우

❖ 부당청구 가담종사자 급여제공제한 처분의 판단기준

- 위반행위의 기간, 횟수, 동기 및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 및 고려하여 부당청구에 주도적으로 가담하여 급여제공의 제한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급여제공제한 처분

예 시설장 김OO은 급여비용을 청구함에 있어 요양보호사 박OO과 공모하여 2016. 2.부터 2019. 1.까지 수급자OOO에게 주말 및 공휴일에 총 294회에 걸쳐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요양보호사 이름으로 급여제공기록지를 허위 작성하고 부당하게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총 1,325만원의 급여비용을 지급받은 뒤 매달 20만원씩 요양보호사 박OO에게 건네준 사실이 있음.

⇒ 시설장 김OO, 요양보호사 박OO 급여제공제한 6개월 처분

- 자격(면허)증 대여·양도 등의 경우 자격(면허)의 취소사유가 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가담자 급여제공제한 처분 시 대여·양도한 자와 대여·양도 받은 자의 행위에 대해서도 처분 가능
- 거짓이 아닌 단순·착오로 부당청구가 확인된 경우 급여제공제한 처분에서 제외

❖ 부당청구 가담종사자 급여제공제한 범위

- 법 시행(‘16.12.30.)이후 위반행위에 대해서 급여제공제한 처분을 할 수 있음
- 장기요양급여제공 제한처분은 해당 종사자가 처분 받을 당시 직종 이외에 장기요양급여제공과 관련된 조리원, 위생원, 관리인, 사무원 등 모든 직종에 해당됨
 - 장기요양급여제공 제한처분을 받은 종사자는 급여제공제한 기간 중 모든 장기요양기관에서 어떠한 직종으로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직·간접적으로 제공할 수 없음
-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종사자와 동일한 행정처분 효력을 가짐
 - 예** 법인 대표자가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로 부당청구에 가담하는 경우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책임의 감면 등)에 따라 공익신고자는 급여제공제한을 면할 수 있음
 - ※ 공익신고자가 부당청구행위 가담자일 경우 행정처분 면제로 인하여 간접적으로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될 수 있으므로 행정처분 청문 시 별도 진행 요함

나. 과징금 부과

○ 과징금 적용기준

- (과징금 부과대상) 법 제37조의2에 따라 업무정지가 해당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행령 제15조[별표 2] ‘과징금 부과 기준’(붙임2-1)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업무정지 명령에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0-328호(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제2조(과징금 부과대상) 참조 : 기타 참고자료 4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업무정지명령이 수급자 및 그 가족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제2조제1호)
-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접 또는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인 경우(제2조제2호가목)
- 해당 장기요양기관에서 최초로 적발된 위반행위로서 업무정지기간이 30일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시행규칙 별표2 4. 과징금처분 제외대상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제2조제2호나목)
- 장기요양기관의 폐업 또는 법인이 개설한 장기요양기관의 대표자 인격 변경 등으로 인하여 업무정지명령이 제재수단으로서 실효성이 없어 과징금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제2조제2호다목)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개설한 장기요양기관 중에서 조사 대상기간 동안에 개설자 및 개설기간을 달리하는 등으로 인하여 각 개설자별 및 각 개설기간 별로 부담금액이나 업무정지기간을 구분하여 산출하기 어려운 경우(제2조제2호라목)
- 업무정지명령을 하게 되면 장기요양급여에 중대한 차질이 우려되는 등 공익상 필요성에 따라 과징금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제2조제2호마목)

- (과징금 부과 제외대상) 법 제37조의2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9조의4제1항

※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 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수급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

○ 과징금 부과기준

- 시행령 제15조[별표2] ‘과징금 부과 기준’에 따라 법 제37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이유로 시행규칙 제29조[별표2] ‘행정처분의 기준’ 제2호에서 정한 위반행위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에 대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한 경우’와 ‘그 외 위반행위’로 구분하여 처리하되 합산하여 부과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한 경우) 총 부당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
 - 부당금액에 업무정지 기간별 배율을 곱하여 과징금액 산정

업무정지 기간	과징금액
10일 이하	총 부당금액의 2배
10일 초과 30일 이하	총 부당금액의 3배
30일 초과 50일 이하	총 부당금액의 4배
50일 초과	총 부당금액의 5배

- (그 외 위반행위) 지정 기준 위반 등 아래의 위반행위에 대해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 법 제37조제1항제1호의2·제2호·제3호·제3호의2·제3호의3·제3호의4·제3호의6·제3호의7·제5호·제6호(제6호의 경우 법 제37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

- 급여외행위를 제공한 경우(다만,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 제외)
-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 장기요양급여를 거부한 경우
-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수급자를 소개, 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조장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장기요양요원에게 급여 외 행위를 제공하도록 지시하거나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 부담 요구
-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회계부정 행위가 있는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평가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 자료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제출을 한 경우나 질문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경우

- 과징금 산정방식 : 업무정지기간* × 1일당 과징금액**

* 업무정지 1개월은 30일로 산정

** 1일당 과징금액 : 연간 총수입금액(장기요양급여비용 : 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 별로 과징금표(시행령 제15조[별표2]제1호의 다목: 붙임2-1)에서 정한 업무정지 1일당 과징금

다. 지정할 수 없는 기간

○ 적용 기준

- 법 제 37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에 따라 지정취소 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업무정지 명령을 받고 업무정지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장기요양기관 지정 불가

○ 적용 세부기준

근거법조문 (개정일)		법 제37조 제5항 (2008.6.11)	법 제37조 제5항 (2013.8.13.)	법 제37조 제6항 (2015.12.29.)	법 제37조 제8항 (2018.12.11.)
위반행위발생일		~2014.2.13.	2014.2.14.~ 2016.12.29.	2016.12.30.~ 2019.12.11.	2019.12.12.~
재지정 (재신고) 금지기간	지정취소 (폐쇄명령)	지정취소 (폐쇄명령)	1년	3년	3년
	업무정지	사유별 금지기간 (상이 ^주)	업무정지 기간	업무정지 기간	업무정지 기간

※ 주) 시행령 제15조 '재지정 및 재신고 금지기간'[붙임2-2]참조

라. 과태료의 부과

○ 과태료부과 적용기준

- 법 제69조 및 시행령 제29조 [별표 3] '과태료 부과기준'(붙임 3)에 따라 장기요양기관(기관기호) 단위별·각 위반행위별 최종 위반행위 발생일^{주)} 기준으로 위반행위자에게 과태료 부과

※ 주) 위반행위 발생일 :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일 기준

※ '14.2.14.부터 과태료 부과권자가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위반행위 시점이 '14.2.14. 이전이라도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

○ 과태료부과 일반기준

- (위반행위의 횟수) 최근 1년간 동일한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
 - 기준 적용일 :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그 부과처분 이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

※ 2019.12.12.이전 시행령 별표3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른 위반행위로 과태료의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2019.12.12.이후 아래와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 법 제69조제1항제6호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경우
 - 법 제60조 또는 법 제61조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 요구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경우나 질문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경우
-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으므로 2019.12.12.부터 새로운 처분차수로 시작
- 관련근거: 부칙<제29833호, 2019.6.11.> 제3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제2항 '이 령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의 부과처분은 별표 3 제2호 아목 및 자목의 개정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합산하여 부과하되 법 제69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500만원 이하) 범위 내에서 산출
- (과태료의 감경)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2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과태료 감경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미성년자

-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 그 밖에 위반행위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 과태료를 줄일 수 없는 대상(또는 과태료 경감의 제외대상) :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
- (과태료의 가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금액의 1/2의 범위에서 늘릴 수 있으나 법 제69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500만원 이하)을 넘을 수 없음
 -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법 위반상태인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행정처분 산출내역 보고 및 부당이득금 징수(공단)

○ 현지조사 지원결과 보고(통보)

- 현지조사 종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현지조사 지원 결과서(서식 13호 및 서식 13호의2)'를 현지조사 주관기관으로 보고(통보)
 - 다만, ① 적발사항의 법적구성요건 등에 대해 법률자문을 의뢰하였거나, ② 2개 이상의 장기요양기관을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조사 지원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조사지원에 실제 소요되는 기간을 조사결과 보고(통보)
 - 공단은 '현지조사 지원 결과서' 작성·제출 전에 현지조사 주관기관과 현지조사결과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
 - ※ '현지조사 지원 결과서'상의 기관, 종사자의 부당청구 확인결과, 예상 처분내용 등이 부당이득금에 대한 환수예정 통보 이후 의견제출·검토 과정에서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 작성 및 변경사항 반영 후 '부당금액 및 행정처분(안) 세부내용' 작성·보고(통보)

○ 환수예정통보

- 현지조사 주관기관에 ‘현지조사 지원결과서’ 보고(통보)한 즉시 법 제43조에 따라 부당이득금 징수절차 개시

- 환수예정통보서와 수급자별 세부내역서를 처분 당사자 등에게 통보하고,
- 14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제출 할 수 있음을 안내

※ 수사기관(검·경찰 등), 권한 있는 기관(감사원 등)과 수사·조사를 진행하여 새로운 위법사항이 확인된 경우 그에 대한 사실관계를 재확인하여 현지조사 대상기간 외 부당이득금으로 징수처분 실시

○ 의견 등 접수

- 부당이득금 환수예정 통보내역에 대하여 처분 당사자가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 제출된 의견을 첨부하여 현지조사 주관기관에 통보하고,
-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의견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처분 당사자 및 현지조사 주관기관에 회신

※ 공단은 시·군·구로부터 청문 의견 접수를 통보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검토결과를 시·군·구에 보고(통보)

○ 부당금액 및 행정처분(안) 세부내용 보고(통보)

- 현지조사 종료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부당금액 및 행정처분(안) 세부내용(서식 14호 및 서식 14호의2)’을 현지조사 주관기관으로 보고(통보)
- 의견 등 접수 된 경우 의견검토내용을 반영하여, 의견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당금액 및 행정처분(안) 세부내용’ 보고(통보)

〈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처분(안) 세부내용 통보 여부 〉

부당이득금	위반행위 ^{주)}	통보 여부	통보 시기
유	유	통보	조사종료일로부터 45일 (의견제출일로부터 30일)
	무	통보	
무	유	통보	지원결과서와 동시통보
	무	미통보	-

※ 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2] 행정처분의 기준, 동법 시행령 제29조 [별표3]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른 위반행위

- 법 제43조에 따른 부당이득금이 있는 경우,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유무와 상관없이 ‘부당금액 및 행정처분(안)세부내용’ 통보
- 법 제43조에 따른 부당이득금이 없으나,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결과서 통보 시 ‘부당금액 및 행정처분(안) 세부내용’ 동시통보 단, 행정처분 및 과태료 모두 없는 경우에는 ‘부당금액 및 행정처분(안) 세부내용’ 통보 생략가능
-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행정소송 등으로 인해 위반행위 내용 또는 행정처분(안) 세부내용이 변동되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부당금액 및 행정처분(안) 세부내용 재보고(통보)

○ 환수결정통보

- ‘부당금액 및 행정처분(안) 세부내용’ 보고(통보) 즉시 환수예정통보금액을 징수금액으로 확정·징수결정하고 처분 당사자에게 납부 고지

※ 다만, 의견검토 결과 환수금액이 변동되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환수결정통보

- (고지방법) 처분 당사자에게 납부고지 하되, 처분 당사자가 계속사업자인 경우에는 부당이득금을 월별 청구금액에서 전산상계, 폐업·해산 등의 경우에는 현금고지 등을 실시
- 체납한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처리
- 환수결정 통보 및 납부고지를 할 때에는 처분 당사자에게 ‘법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할 수 있음’을 안내

○ 심사청구 등

- 부당이득금 환수결정통보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어 공단을 대상으로 심사청구(법 제55조), 재심사청구(법 제56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57조)을 제기하는 경우 그 내용을 즉시 현지조사 주관기관에 보고(통보)하고,
- 심사청구 등의 절차가 종료된 경우 그 결과(‘부당금액 및 행정처분(안) 세부내용’ 변동 사항 포함)를 즉시 현지조사 주관기관에 보고(통보)

○ 행정처분 확정 등

- 시·군·구로부터 행정처분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 해당기관 이용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 대한 방문 또는 유선 등의 방법에 의한 이용지원을 통해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안내

4 조사결과 통지 및 행정처분(지자체)**가. 조사결과와 통지**

- 보건복지부 등은 현지조사지원 결과를 검토·확인 후 현지조사 결과를 확정할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조사 대상자에게 통지(서식16호)

※ 근거: 「행정조사기본법」 제24조

나. 행정처분 절차

○ 행정처분 사전통지

-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현지조사의 ‘현지조사 지원 결과서’ 및 ‘부당금액 및 행정처분(안) 세부내용’은 보건복지부에서 시·도를 거쳐 장기요양기관을 관할하는 해당 시·군·구에 통보
 - 보건복지부는 공단이 통보한 ‘부당금액 및 행정처분(안) 세부내용’을 확인(검토)하고, ‘부당금액 및 행정처분(안) 세부내용’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시·도에 통보→시·도는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에 통보
- 시·군·구는 보건복지부 또는 공단이 통보한 ‘부당금액 및 행정처분(안) 세부내용’을 확인(검토)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처분 당사자에게 예정된 행정처분을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에 따라 사전통지하고 공단에도 행정처분 절차 개시(‘부당금액 및 행정처분(안) 세부내용’(서식 14호 및 서식14호의2 포함)를 통보

※ 시·군·구는 통보 받은 ‘부당금액 및 행정처분(안) 세부내용’ 중 조사 결과 자료, 위반행위 증빙 자료 등의 확인 및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보완요청 사항을 문서 등으로 통보

- (서면통보) 시장·군수·구청장은 처분 당사자에게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처분사전통지를 다음의 내용으로 서면통보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 청문기관·청문주재자의 소속·직위 및 성명, 청문일시 및 장소
- 청문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서면으로 의견제출이 가능함을 안내 등
- ※ 「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청취 생략 가능. 단,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 당사자 등에게 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유를 알려야 하나, 신속한 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 후 그 사유를 알릴 수 있음

⇒ 현지조사를 담당한 공무원과 공단은 ‘현지조사 지원 결과서’ 및 ‘부당금액 및 행정처분(안) 세부내용’을 확정하기 전에 조사결과에 따른 ‘확인서(서식 11호)’의 조사내용과 관련한 증거능력, 해당처분의 법률적합성 등 상세한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를 거쳐 행정처분 사전통지대상 처분내역을 산출

○ 의견청취

- (청문실시)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업무정지, 지정취소, 공표, 장기요양급여제공의 제한 처분 대상 처분 당사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확정하기 이전에 반드시 청문 실시

※ 단, 경고 및 과태료 처분만 있는 경우에는 청문절차 생략할 수 있으나, 처분 당사자는 의견제출 가능

- 공단으로 제출한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청취 시 이를 포함하여 청문절차를 진행
- 이 경우 제출된 의견은 행정처분과 관련한 의견청취 절차에 반영하여 처리할 것임을 처분 당사자에게 안내

※ 시·군·구는 보건복지부가 조사결과를 통보한 건에 대한 의견 제출을 받은 경우 보건복지부 등에 의견제출 내용을 송부하고, 보건복지부 등은 의견제출 내용 검토결과를 청문절차가 종료되기 전까지 해당 시·군·구에 통보

- (처분 당사자 의견제출) 시·군·구는 의견청취 절차 중 제출된 의견이 현지조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으로서 해당 조사지원을 담당한 공단의 판단이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 주관기관 및 공단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지체 없이 통보 조치

-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명의로 조사) 보건복지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 의견제출서(증빙자료 사본 포함)를 첨부한 공문을 지체 없이 송부하고, 복지부 등은 공단 조사지원팀을 통해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게 한 후, 의견검토 결과를 최종 확정하여 이를 시·군·구에 통보
- (시장·군수·구청장 명의로 현지조사) 공단 조사지원팀에 의견제출서(증빙자료 사본 포함)를 첨부한 공문을 지체 없이 송부하고, 공단은 요청된 의견을 검토하고 결과를 시·군·구에 통보

※ 기타 청문 및 의견제출 등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처리

※ 근거: 「행정절차법」 제22조

○ 행정처분 확정

- 시장·군수·구청장은 청문실시 결과(보건복지부, 시·도, 공단의 검토결과 포함)를 검토하고, 청문종료 후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시행규칙 제29조 [별표 2]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라 행정처분을 확정

* 특별한 사유: 천재지변이나 비상재해, 재난발생, 화재발생 등 그 밖의 중대한 재해로 인하여 행정처분 절차를 더 이상 진행하기 곤란한 경우

행정처분 확정 시 유의사항

- ❖ 부당이득금 환수와 행정처분은 별개의 처분이므로 각각의 처분절차에 따라 진행
 - (공단)부당이득금 환수처분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 (시장·군수·구청장)행정처분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 ❖ 다만, 공단의 부당이득금 환수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재심사청구·행정소송 등이 진행 중인 경우 그 처분결과를 반영하여 행정처분 할 수 있음

○ 행정처분의 통지 및 처분실시

- 시장·군수·구청장은 행정처분(경고처분 포함)을 확정하는 경우 시행규칙 제29조의2 (행정처분대장 등의 기록·관리)에 따라 사회보장 정보시스템(행복e음) 통해 반드시 행정처분 결과를 입력·관리하고 결과를 즉시 보건복지부와 시·도에 보고 및 공단에 통보(서식 15-1호, 서식 15-2호)

행정처분 절차 진행 중 폐업 등으로 처분 대상 기관이 없을 경우 유의사항

- ❖ 법 제37조 및 제37조의2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에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지정취소 등의 처분이 가능
- ❖ 법 제37조의4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에 따라 양수인 등은 운영중인 기관과 동일하게 처분 적용 대상임
 - ☞ 위 법조항에 따라 폐업기관에도 행정처분을 진행하되 행정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고려(행정제재처분 효과 승계 여부 등)하여 처분 실시 및 내역통보 (행복e음 등록)
 - ※ 감사원 지적사례 : 부당청구가 적발된 장기요양기관을 행정처분 대상으로 확정하였으나, 처분청(00시)은 행정제재처분의 효과 승계 검토 없이 위 기관이 폐업과 동시에 대표자의 부인이 같은 장소, 같은 이름으로 요양기관 재설립하여 운영하도록 방치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행정처분 확정 결과를 처분 당사자에게 통보할 경우 행정처분 실시 전에 다음의 조치를 실행
 - 법 제37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 제5항·제6항에 따라 수급자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인근 지역 장기요양기관을 안내, 전원조치 등 수급자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실행
- 시·군·구는 처분 당사자가 행정처분에 대해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내용을 즉시 조사 지원을 담당할 공단 및 보건복지부 등에 통보 하고, 행정심판·소송의 절차가 종료된 경우 그 결과를 즉시 공단 및 보건복지부 등에 통보

다. 과태료 부과 절차

○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 시장·군수·구청장은 현지조사 결과에 따른 과태료 처분 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과태료 부과대상인 경우 서면*통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부과처분 당사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제공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처분 당사자가 제기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거나 통지한 내용 변경 가능
 - 지정된 날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 시장·군수·구청장은 처분 당사자가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 100분의 20범위에서 감경가능**

* (서면통지 내용) 당사자의 성명과 주소, 과태료 부과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금액 및 적용 법령 등

** (감경근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는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송달
 - 만약, 처분 당사자(송달 받을자)의 주소 등을 통상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
- 시장·군수·구청장은 과태료를 확정하는 경우 시행규칙 제29조의2(행정처분대장 등의 기록·관리)에 따라 사회보장 정보시스템(행복e음) 통해 즉시 과태료 처분 결과를 입력·관리

○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

- 시장·군수·구청장은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법 시행령 제29조[별표 3]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서면으로 과태료 부과
- 법 제69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기관기호) 단위별·위반행위별로 위반행위자에게 과태료 부과
 - 다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3조에 따라 하나의 행위가 2개 이상의 질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만을 부과

예시 기록관리 미비(50만원)와 자료제출거부(100만원) 등 해당항목이 별개일 경우는 각각의 항목 별로 과태료 부과금액을 합산하나 기록관리미비로 자료제출거부를 한 경우에는 가장 중한 금액 100만원으로 과태료 부과

○ 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 (이의제기)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처분 당사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시·군·구에 서면으로 이의제기가 가능함을 통지

- 처분 당사자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효력 상실
- (법원에의 통보) 이의제기를 받은 시·군·구는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검토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

* 처분 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관할

○ 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 (가산금 징수) 처분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 징수
 -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증가산금을 부과
 - 다만, 증가산금의 부과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함
- (체납처분) 「지방세 기본법」 제61조에 따른 독촉 및 제91조에 따른 압류 등의 절차 진행
- (결손처분) 「지방세 기본법」 제96조에 따라 결손처분 가능
 - 결손처분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 발견 시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 실시

라. 과징금 부과·납부 등 절차

- (과징금 부과) 시장·군수·구청장은 업무정지가 해당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업무정지명령을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
 - (과징금 부과) 처분(업무정지)사전통지를 받은 장기요양기관 중「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 기준(보건복지부고시)」제2조제1호의 각 목과 제2호의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과징금 부과대상에 해당하는지 검토 후 과징금 부과 결정

- (부과 서면통지) 시장·군수·구청장은 과징금 부과 시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 처분(납부)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
- (납부) 처분(납부) 당사자는 통지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납기관에 납부
 -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함

5 ▣ 위반사실 공표(지자체)

① 개요 및 주요 변경사항

❖ 명단 공표 개요

- (개념) 재가·시설 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하거나 조사 등을 거부하여 행정처분이 확정된 장기요양기관의 위반사실 등을 공표
-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의3(위반사실 등의 공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4 내지 제15조의7
- (공표사항) 법률 위반사실, 처분내용, 장기요양기관의 명칭·주소, 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성명, 장기요양기관 및 급여의 종류, 기관의 지정일(또는 지정의 갱신일), 시설장의 성명(장기요양기관장과 다른 경우)

❖ 주요 변경사항 (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 '20.10.1.) 관련)

- (공표 성격) 재량행위에서 **기속행위(의무사항)**로 변경
- (공표 대상) 장기요양급여비용 거짓 청구 외에 **자료제출(현지조사) 거부** 등으로 행정처분이 확정된 경우 추가
 - ☞ 개정사항은 개정법 시행일('20.10.1.) 이후 최초로 위반행위를 하여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처분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
 - cf)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발생 시점이 '20.10.1. 이전인 경우, 명단공표 여부는 개정 전 법률에 따라 지자체 재량사항
 - ☞ 개정 법령상* 지자체의 명단 공표시 복지부 통보 규정 신설에 따라 복지부는 공표 실시 현황 등 관리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5조의4(공표 여부의 결정, 절차 및 방법) 제5항

② 업무 처리절차

① 공표대상기관 선정

- (공표 대상) 아래 사유로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처분이 확정된 장기요양기관**
 -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또는 장기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

-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자료제출을 한 경우, 질문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경우
- (제외 기능) 장기요양기관의 폐업 등으로 공표 실효성이 없거나, 공표 전에 자료를 제출하거나 질문·검사 등에 응한 경우

② 대상기관에 서면 통지

- 공표대상 장기요양기관에 ‘공표대상 장기요양기관이라는 사실’과 ‘공표사항’을 서면으로 통지
- ☞ 공표심의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통지

③ 청문 실시 및 공표여부 확정

- 청문을 실시하고 공표대상기관의 공표 여부 결정
 - 출석한 경우 : 청문 결과를 고려하여 공표여부 결정. 다만, 공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재심의를 거쳐 공표여부 결정
 - 불출석한 경우 : 통지한 대로 공표하기로 결정

④ 명단 공표

- 6개월 동안 관할 시·군·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정보공개시스템이나 공단 홈페이지에 추가 공표* 가능
- * 공표대상 위반행위가 중대하거나 반복적인 경우 신문, 방송에 추가 공표 가능
- 공표기간 중 변경지정 등으로 공표사항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 즉시 공표사항에 반영

⑤ 복지부 통보

- 명단을 공표한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복지부로 통보
- 명단을 공표한 시·군·구는 특별시·광역시·도를 거쳐 통보

☐ 행정사항

- 분기별 명단공표 실시현황 제출*
- * 제출기관 : 특별시·광역시·도, 특별자치도

6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 법 제37조의4의 규정에 따라 제37조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따른 행정제재처분은 양수인 등에게 승계
 -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을 한 날부터 3년간 승계

- 행정제재처분이 진행 중인 기관을 양도한 경우 등은 양수인 등에게 처분 절차를 계속 이어서 진행

※ 양수인 등 : 기관을 양도한 경우 양수인, 법인으로 합병된 경우 신설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기관 폐업 후 같은 장소에서 기관을 운영하는 자 중 종전에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자나 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 기관 폐업 후 3년 이내 같은 장소에서 기관을 운영하는 자 중 종전에 위반행위를 한 자나 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법 제37조의4 참조)

※ 법37조의4의 개정규정(2014.2.14.부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2016.12.29.까지)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1년) 따름

- **(승계 제외사유)** 양수인 등이 양수, 합병 또는 운영 시에 행정제재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
- **(처분사실 통보 의무화)** 행정제재처분을 받았거나 그 절차가 진행 중인 자는 양수인 등에게 내용증명 및 배달증명의 방법으로 지체 없이 해당 사실을 양수인 등에게 통보
- 위반 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9조제1항제4의2호에 의해 과태료 부과(시행령 별표3)

7 장기요양급여제공의 제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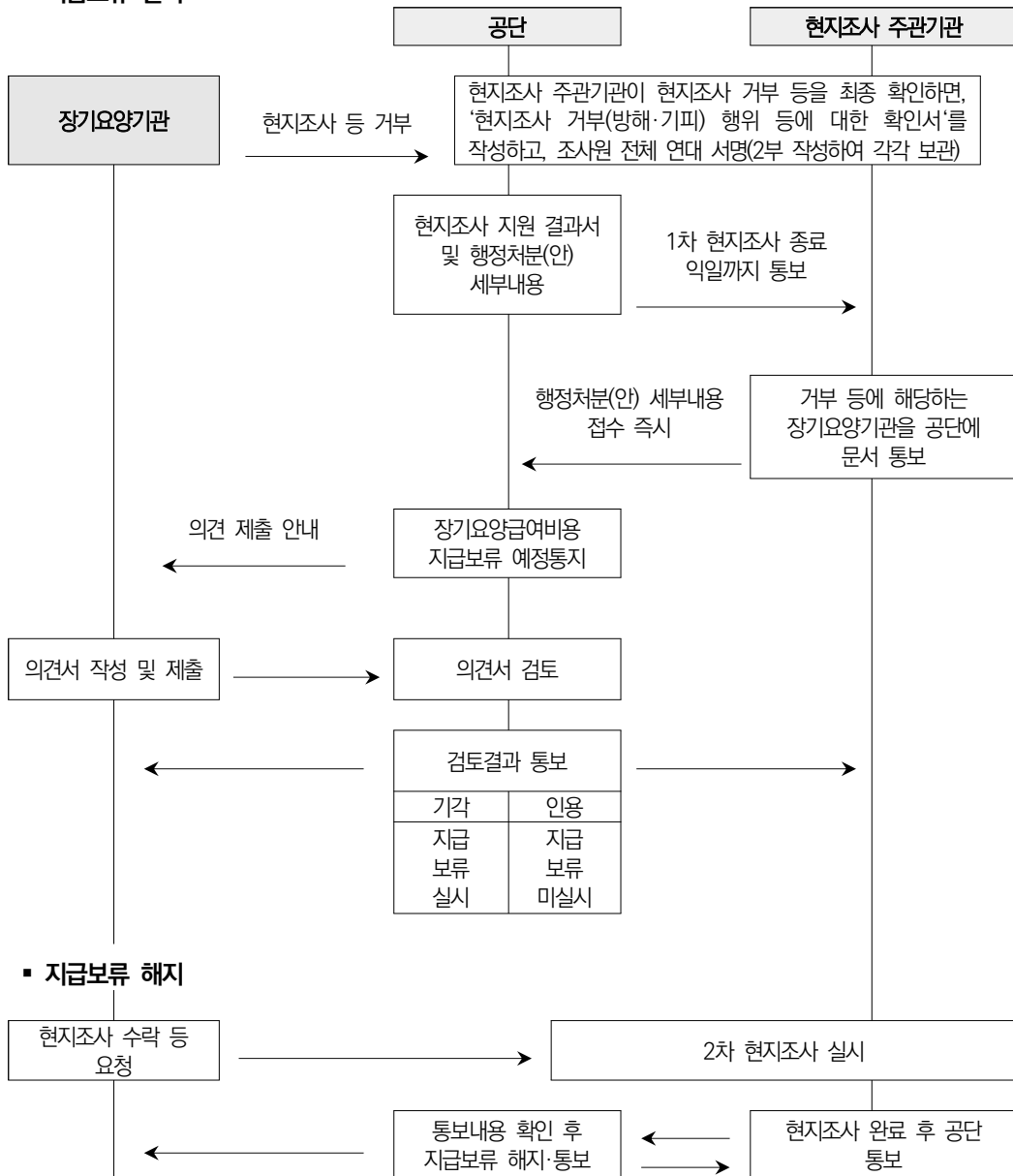
-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7조의5의 규정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행위에 가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급여제공제한 처분
 -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1년의 범위에서 제한하는 처분
 - 장기요양종사자에게 급여제공제한의 처분을 한 경우 지체 없이 공단에 통보
-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에 대한 기준 : 붙임 1 참조

8 급여비용의 지급보류

○ 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제7항, 시행규칙 제31조의3

※ 급여비용의 지급보류는 공단이 그 주체이나, 임의로 이뤄져서는 안 되며 관련법령에 의거 반드시 관할 지자체 등(현지조사 주관기관)의 통지에 따라 실시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함

■ 지급보류 실시



■ 지급보류 해지

○ 장기요양 급여비용 지급보류 검토

- ① 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질문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이하 “거부 등”이라 한다) 등 법 제61조제2항에 따르지 않는 경우, 법 제38조 7항에 의거 장기요양 급여비용 지급보류 실시 가능
- ② 현지조사 주관기관 및 공단은 현지조사 실시 과정에서 장기요양기관의 “거부 등”이 있는 경우, 장기요양기관의 대표자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대상으로 ‘현지조사 거부(방해·기피) 행위 등 확인서’에 해당 행위나 상황을 구체적으로 작성
- ③ 공단은 1차 현지조사 종료일의 익일까지 ‘현지조사지원결과서 및 행정처분(안) 세부내용[서식 13호의3]’에 위 확인서 및 관련 서류 등을 첨부하여 현지조사 주관기관에 문서로 통보
- ④ 현지조사 주관기관은 ‘현지조사지원결과서 및 행정처분(안) 세부내용[서식 13호의3]’을 통보받은 즉시 해당 장기요양기관을 공단에 문서로 통지

○ 장기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예정통보 및 행정처분 절차개시

- ① 공단은 현지조사 주관기관으로부터 “거부 등”에 해당하는 장기요양기관을 문서로 통지 받은 후, 지체 없이 해당 장기요양기관에 “장기요양 급여비용 지급보류 예정통보” 문서를 시행
- ② 공단이 지급보류 대상 장기요양기관에 통지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음(시행규칙 제31조의3)

1. 장기요양기관의 명칭·주소
2. 장기요양기관의 장(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의 성명
3. 지급 보류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지급 보류의 대상이 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및 법적 근거
4. 제3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의 처리방법
5. 그 밖에 공단이 지급 보류에 관하여 통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한편, 현지조사 주관기관은 장기요양기관의 현지조사 거부 등으로 1차 현지조사가 종료된 후 14일 이내에 법 제37조 제1항 5호의 위반에 따른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 절차를 개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단과 해당 장기요양기관에 각각 행정처분 절차 개시에 대한 사항을 문서로 통보

○ 의견접수 및 검토결과 회신… 공단

- ① 공단에서는 지급보류 대상 장기요양기관에 장기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지급보류에 대한 이의신청의 취지와 그 이유를 적은 의견서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안내(단, 의견은 공단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기한 이내 제출)

※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지급보류 예정통지를 받은 초일과 토요일, 공휴일은 산입하지 않으며,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공휴일에 해당한 때의 기간은 그 익일로 함(「민법」 제161조 준용)

- ② 공단은 지급보류 대상 장기요양기관이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한 경우, 의견내용을 검토하고 아래의 기각 또는 인용을 포함하여 그 결과를 해당 장기요양기관과 현지조사 주관기관에 7일 이내 문서로 통보

- 기 각 : 장기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실시 결정
- 인 용 : 장기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미실시 결정

○ 현지조사 주관기관의 검토 및 통보

- ① 현지조사 주관기관은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이 보류된 장기요양기관이 자료제출 명령이나 질문 또는 검사에 응한 경우 (현지조사의 경우 2차 현지조사가 종료된 때) 그 사실을 공단에 통보
- ② 공단은 현지조사 주관기관으로부터 위 ①의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지급보류 처분을 받은 장기요양기관에 지급보류 해지를 문서로 통보하고, 지체 없이 보류된 장기요양 급여비용을 지급

9 타 법령 위반사항 조치

가. 타 법령 위반(의심)자 조사 및 통보

- 공단은 현지조사 결과 타 법령 위반자를 확인한 경우 ‘현지조사 지원 결과서’에 해당내용을 기재하여 현지조사 주관기관으로 보고(통보)
 - 위반행위를 통보할 때에는 위반자 본인이 서명한 사실확인서, 기관대표자, 동료종사자, 수급자(보호자) 또는 관계자의 사실확인서 등 타 법령 위반사실이 명백히 확인 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
- 공단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현지조사 주관기관은 타 법령 위반사항을 확인(검토)하고, 위반행위별 관계 행정기관이나 담당부서로 통보

〈 타 법령 위반 행위별 통보처 〉

근거법	적용대상	위반사항	통보처
노인복지법 제39조의14(요양보호사 자격의 취소)	요양보호사	○ 요양보호사 자격증 대여·양도 또는 위조·변조 등	○ 시·도
의료법 제65조 (면허취소와 재교부) 의료법 제80의3 (준용규정)	간호사 간호조무사	○ 의료인이 자격정지 처분기간 중 의료 행위 ○ 의료인 면허증·자격증 대여 등	○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 시·도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제21조(면허의 취소 등)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위생사	○ 자격 정지 처분 기간 중 의료행위 ○ 의료기사등의 면허증 대여 등	○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3(사회복지사의 자격 취소 등)	사회복지사	○ 사회복지사 자격증 대여·양도 또는 위조·변조 등 ○ 자격정지처분기간 중 자격관련 업무 수행	○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
국민영양관리법 제21조(면허취소 등)	영양사	○ 면허정지처분기간 중 영양사 업무 수행 ○ 영양사 면허를 타인에게 대여	○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근거법	적용대상	위반사항	통보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6조(비용의 징수)	수급자	○ 급여 부정 수급 등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고용보험법 제35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실업급여자	○ 실업급여 부정수급 등	○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국민건강보험법 제11조(자격취득 등의 확인)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	○ 요양보호사, 간호사 및 물리치료사 등의 허위 등록	○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 ○ 공단 자격부과부 ^{주)}

주) 국민건강보험법 관련 위반사항의 경우 공단이 해당 부서로 자체 통보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 4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해당부서로 자체 통보

나. 노인복지법 등 위반사항 처리

○ 시장·군수·구청장은 현지조사 결과 지정받은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는 노인복지법이나 사회복지사업법상 위반에 대해서도 개별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실시. 통보된 자료만으로 위반행위 입증이 어려운 경우 추가적 지도·점검 등을 통해 관련자료 확보·검증 등 후속조치 병행

- (시설·인력배치 위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 관련 [별표4]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위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 관련 [별표9]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위반 등에 따른 행정처분 실시

※ 위반행위 **예** 침실 정원을 5명 이상으로 운영, 실제 근무하지 않은 종사자(필요인력) 허위등록 등

- (회계부정 등 불법행위) 허위등록 종사자나 무자격 종사자 등에 의한 장기요양 급여비용 청구에 따른 회계서류, 통장 등 급여이체자료 확인결과 「사회복지사업법」상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기타 부당행위 등에 따른 행정처분 실시

- 공단은 허위등록 종사자, 무자격 종사자, 종사자의 근무시간을 부풀려서 신고한 경우 등이 현지조사에서 확인된 경우 보건복지부 등에 보고(통보)하고, 시·군·구는 급여지급 여부 등 회계부정에 관한 추가 사항을 확인하여 행정처분 등을 실시

※ 근거규정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 행정처분의 기준

- 공단은 현지조사 결과 노인복지법 등 위반이 확인된 경우 ‘현지조사 지원 결과서’에 세부내용을 기재하고, 위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현지조사 주관기관에 보고(통보)



참고법령 등

V. 참고법령 등

1 형사고발(수사의뢰)

가. 관련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7조(벌칙) 및 제68조(양벌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7조, 제68조

제67조(벌칙)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12. 29.>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1., 2020. 12. 29.>

1. 제31조를 위반하여 지정받지 아니하고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자
2. 삭제 <2018. 12. 11.>
3. 제35조제5항을 위반하여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감경하는 행위를 한 자
4. 제35조제6항을 위반하여 수급자를 소개, 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조장한 자
5. 제62조를 위반하여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12. 29., 2018. 12. 11., 2019. 4. 23., 2020. 12. 29.>

1.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을 거부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장기요양급여를 받게 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36조제3항 각 호에 따른 권익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
4. 제37조제7항을 위반하여 수급자가 부담한 비용을 정산하지 아니한 자

④ 제61조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제출을 한 장기요양기관이나 질문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장기요양기관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및 그 밖의 종사자가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7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형법」, 「형사소송법」 관련조항

형법 및 형사소송법 관련 조항

- 형법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형법 제347조(사기)
 -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형사소송법 제234조(고발)
 - ①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 ②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併科)할 수 있다.

나. 형사고발(수사의뢰) 주체

- 보건복지부, 특별시·광역시·도, 특별자치시·도, 시·군·구,공단

※ 현지조사 결과에 따른 수사의뢰(고발)은 현지조사 주관기관과 조사지원기관(공단 등)이 협의 후 결정하되, 현지조사 주관기관 또는 조사지원기관 모두 수행가능, 단, 거짓청구와 관련된 고발은 공단에서 수행

다. 형사고발(수사의뢰) 대상자

- 장기요양기관 대표자 및 종사자
- 수급자 또는 보호자
- 그 외 관련자

2 행정쟁송 협조

- 행정처분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제기된 경우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은 공단에 조사의 내용 등에 관한 답변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공단은(해당 현지조사에 인력을 지원한 공단 지사·지역본부·본부) 이에 협조

3 현지조사 관련 합동 회의 실시

- 현지조사 업무 수행 주기적 점검을 위한 기관 간 합동 회의
 - 시·도, 시·군·구 및 공단은 현지조사 업무 수행 상황 점검, 조사방안 협의 등을 위한 회의체 운영(반기별)
 - ※ 회의주관 : 시·도, 시·군·구(또는 공단)
 - 주요회의 내용 : 현지조사 선정의뢰 현황, 현지조사 실시 현황, 현지조사 방향, 지도점검 대상 기관 관리 방안, 기타 자료 공유 등

4 장기요양기관 적정운영 실태 점검

- 공단은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에 대한 부당청구 등 개선여부확인 및 재발방지를 위해 정기적 운영실태 점검 실시
- 행정처분(업무정지 이상)을 받은 기관에 부당하게 장기요양급여비용이 지급되고 있는지 확인·관리하고 불법·부당행위 등 법령 위반 사항을 점검하여 필요시 현지조사 의뢰 실시

[붙임1. 행정처분 개별부과 기준] (시행규칙 제29조 별표2 참조)**행정처분기준 관련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 개정이력**

시행일	개정내용
① (2008.06.11.)	- 법 시행규칙 제17조에서 제29조로 이동
② (2010.03.01.)	- 재가장기요양기관 법 제60조(자료의 제출 등)와 제61조(보고 및 검사)의 행정처분 기준 분리
③ (2013.10.22.)	- 법 제37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제1항제4호, 제3항제4호에 따른 부담 청구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행정처분 제외
④ (2014.02.14.)	- 행정처분기준 신설: 법 제35조(장기요양기관의 의무 등)제5항의 본인부담금 면제·감경, 제6항의 수급자 소개·알선·유인, 법 제37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제1항제7호, 제3항제5호의 업무정지기간 중 장기요양급여 제공 - 행정처분기준 제외: 법 제60조(자료의 제출 등)에 의한 위반행위 - 그 외 장기요양기관과 재가장기요양기관의 행정처분기준 명확화
⑤ (2016.12.30.)	- 행정처분기준 신설: 법 제32조의2(결격사유) 지정 및 설치신고 할 수 없는 자, 제37조의5(장기요양급여제공의 제한)부담청구에 가담한 종사자
⑥ (2018.03.30.)	- 행정처분기준 신설: 법 제36조의2(시정명령)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회계부정 행위가 있는 경우
⑦ (2019.06.12.)	- 행정처분기준 신설: 법 제28조의2(급여외행위 제공 금지), 법 제35조의4(장기요양 요원의 보호)제2항 장기요양요원에게 급여외행위 및 본인부담금 부담 요구
⑧ (2019.12.12.)	- 법 제32조 삭제: 장기요양기관 지정제 단일화(지정의제 제도 폐지), 기존 법 제32조에 따라 설치 신고한 재가장기요양기관은 법 제31조의 지정된 장기요양 기관으로 봄에 따라 폐쇄명령 처분 지정취소로 변경 - 행정처분기준 신설: 법 제36조(장기요양기관의 폐업 등의 신고 등)제1항 휴폐업 신고 하지 않고 1년 이상 장기요양급여 미제공, 법 제37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제1항제6호 수급자 금품 목적 외 사용 및 수급자 정서 학대, 제1항제8호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 말소

(2020.10.1. 시행) 장기요양급여비용 부담청구에 대한 업무정지

○ 장기요양기관이 법 제3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기준

- 1차 위반 시의 기준: 다음 표에 따른 업무정지

(단위 : 일)

구분 월평균 부담금액	부담청구액의 비율				
	0.5% 이상 1% 미만	1% 이상 2% 미만	2% 이상 3% 미만	3% 이상 4% 미만	4% 이상 5% 미만 ^{주)}
15만원 이상 25만원 미만			10	20	30
25만원 이상 40만원 미만		10	20	30	40
40만원 이상 80만원 미만	10	20	30	40	50
80만원 이상 240만원 미만	20	30	40	50	60
240만원 이상 840만원 미만	30	40	50	60	70
840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40	50	60	70	80
3천만원 이상	50	60	70	80	90

주) 부담청구액의 비율이 5% 이상인 경우에는 초과 1%마다 업무정지기간을 3일씩 가산하되, 그 부담청구액의 비율의 소수점 이하는 1%로 본다. 다만, 업무정지기간을 가산하는 경우에도 총 업무정지기간은 6개월을 넘을 수 없다.

- 2차 위반 시의 기준: 지정취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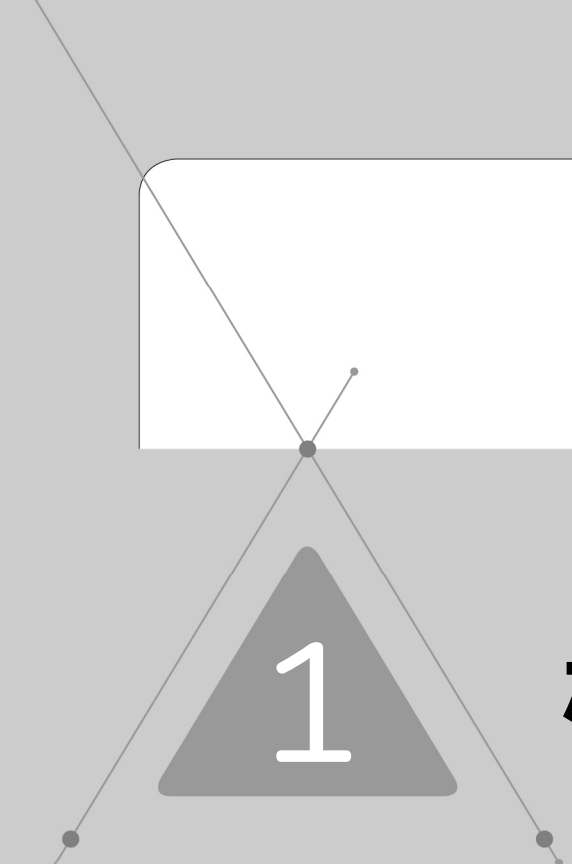
○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에 대한 개별기준

위반행위	해당 조항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이상 위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급여비용 또는 시설급여비용을 청구하는 행위에 가담한 경우	법 제37조의 5 제1항	장기요양급여 제공의 제한 6개월	장기요양급여 제공의 제한 12개월

[붙임2. 과태료 개별부과 기준] (시행령 제29조 별표3 참조)

과태료부과기준 관련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 개정이력

시행일	개정내용
① (2008.06.11.)	- 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에서 제29조제3항으로 이동
② (2009.01.01.)	- 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서 제29조로 변경
③ (2011.04.22.)	- 과태료부과기준 신설 : 법 제35조(장기요양기관의 의무 등)제4항의 급여 제공자료 기록·관리 미비, 법 제36조(장기요양기관의 폐업 등 신고) 제1항, 제4항, 제5항의 휴·폐업신고 또는 자료 미이관 등 -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과태료부과기준으로 변경 - 법 제60조(자료의 제출 등)와 제61조(보고 및 검사)의 과태료 부과기준 분리
④ (2014.02.14.)	- 과태료부과기준 제외: 법 제32조(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설치) 위반, 법 제37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제1항4호, 3항4호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 청구 - 과태료부과기준 신설: 법 제34조(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등)의 정보게시 위반, 법 제35조(장기요양기관의 의무 등)제3항의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 교부 위반, 법 제37조의4(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제4항 처분사실 통보의무 위반 - 제61조(보고 및 검사)의 과태료 부과기준 통일
⑤ (2016.12.30.)	- 법 제35조(장기요양기관의 의무 등)제4항의 급여제공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추가 - 과태료부과기준 신설 : 법 제69조(과태료)제1항제8호 부당청구에 가담한 사람
⑥ (2019.06.11.)	- 과태료부과기준 신설: 법 제62조의2(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위반하여 보험계약 또는 보험계약의 명칭에 노인장기요양보험 또는 이와 유사한 용어 사용한 경우
⑦ (2019.06.12.)	- 과태료부과기준 신설: 법 제35조의4(장기요양요원의 보호)제2항 장기요양요원에게 급여외행위 및 본인부담금 부담 요구
⑧ (2019.12.12.)	- 과태료 부과 금액 상향: 법 제60조(자료의 제출 등), 법 제61조(보고 및 검사), 법 제69조(과태료)1항6호 … 시행 전 위반행위는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음
⑨ (2020.10.1.)	- 과태료부과기준 제외: 법 제61조(보고 및 검사)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명령 등에 따르지 않은 장기요양기관

A decorative graphic on the left side of the page. It features a large, dark gray triangle pointing upwards. Inside this triangle is a white number '1'. From the top vertex of the triangle, a thin gray line extends upwards and to the left, passing through the top-left corner of a white rectangular box. From the bottom-left and bottom-right vertices of the triangle, thin gray lines extend downwards and outwards. Small black dots are placed at the intersections of these lines with the triangle's vertices and at the intersection of the line from the top vertex with the top-left corner of the white box.

1

제재기준

1. 행정처분의 기준
 - 2-1. 과징금 부과 기준
 - 2-2. 재지정 및 재신고 금지기간
3. 과태료 부과기준

[붙임 1] 행정처분의 기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0. 9. 29.〉 [시행일 : 2020. 10. 1.]

행정처분의 기준(제29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5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날과 그 행정처분 이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위반행위의 횟수를 계산한다.
-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처분한다.
- 1)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각각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법 제37조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제외한다)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 2) 둘 이상의 위반행위(법 제3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한 처분기준이 동일한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6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각각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을 합산하여 처분한다.
 - 3) 법 제3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 둘 이상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동일한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법 제3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한 처분기준을 우선 적용하여 처분하고, 6개월 중 나머지 기간의 범위에서 나머지 위반행위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을 합산하여 처분한다.
-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도 불구하고 지정취소할 수 있다.
- 1) 위반행위가 중대한 경우(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 등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처분 기준을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로서 장기요양기관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처분할 위반행위가 4종 이상인 경우
 나) 처분할 위반행위가 제2호가목13)가)부터 마)까지의 행위 중 2종 이상인 경우

라.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경우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정도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1) 법 제3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중 거짓으로 급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한 경우
- 2) 법 제37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 3) 삭제 <2019. 6. 12.>

2. 개별기준

가.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기준(법 제37조제1항제4호는 제외한다)

위반행위	해당 조항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37조제1항제1호	지정취소			
2) 법 제28조의2를 위반하여 급여외 행위를 제공한 경우. 다만,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37조제1항제1호의2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3)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법 제37조제1항제2호	경고	업무정지 7일	업무정지 15일	지정취소
4) 법 제32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같은 조 제7호에 해당하게 된 법인의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법 제37조제1항제2호의2	지정취소			

위반행위	해당 조항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5) 법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장기 요양급여를 거부한 경우	법 제37조제1항제3호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6) 법 제35조제5항을 위반하여 본인 부담금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37조제1항제3호의2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7) 법 제35조제6항을 위반하여 수급자를 소개, 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조장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37조제1항제3호의3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8) 법 제35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	법 제37조제1항제3호의4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9)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하지 않고 1년 이상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법 제37조제1항제3호의5	지정취소			
10) 법 제36조의2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회계부정 행위가 있는 경우	법 제37조제1항제3호의6				
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나) 고의 또는 중과실로 회계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다) 가)또는 나)외의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11)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54조에 따른 평가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법 제37조제1항제3호의7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12)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제출을 한 경우나 질문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경우	법 제37조제1항제5호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위반행위	해당 조항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13)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 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다만,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가) 수급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나) 수급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 다)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수급자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라) 수급자를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마)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수급자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법 제37조제1항제6호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지정취소		
14) 업무정지기간 중에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 경우	법 제37조제1항제7호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15)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 등록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이나 고유번호가 말소된 경우	법 제37조제1항제8호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나. 장기요양기관이 법 제3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기준

1) 1차 위반 시의 기준: 다음 표에 따른 업무정지

(단위 : 일)

구분	부당청구액의 비율				
월평균 부당금액	0.5% 이상 1% 미만	1% 이상 2% 미만	2% 이상 3% 미만	3% 이상 4% 미만	4% 이상 5% 미만
15만원 이상 25만원 미만			10	20	30

구분	부당청구액의 비율				
월평균 부당금액	0.5% 이상 1% 미만	1% 이상 2% 미만	2% 이상 3% 미만	3% 이상 4% 미만	4% 이상 5% 미만
25만원 이상 40만원 미만		10	20	30	40
40만원 이상 80만원 미만	10	20	30	40	50
80만원 이상 240만원 미만	20	30	40	50	60
240만원 이상 840만원 미만	30	40	50	60	70
840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40	50	60	70	80
3천만원 이상	50	60	70	80	90

비고

1. 월평균 부당금액은 조사대상기간 동안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공단에게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금액과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수급자에게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게 한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조사대상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2. 부당청구액의 비율(%)은 (총 부당금액/장기요양급여비용총액)×100으로 산출한다.
3. 장기요양급여비용총액은 조사대상기간에 공단이 심사결정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의 합산 금액으로 한다. 다만,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가 없어 심사결정 총장기요양급여비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총 부당금액을 장기요양급여비용총액으로 본다.
4. 부당청구액의 비율이 5% 이상인 경우에는 초과 1%마다 업무정지기간을 3일씩 가산하되, 그 부당청구액의 비율의 소수점 이하는 1%로 본다. 다만, 업무정지기간을 가산하는 경우에도 총 업무정지기간은 6개월을 넘을 수 없다.

2) 2차 위반 시의 기준: 지정취소

다.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에 대한 기준

위반행위	해당 조항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이상 위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급여비용 또는 시설급여비용을 청구하는 행위에 가담한 경우	법 제37조의5제1항	장기요양급여 제공의 제한 6개월	장기요양급여 제공의 제한 12개월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19. 6. 12.〉 [시행일 : 2019. 12. 12.]

[시행일 : 2019. 6. 12.] 제2호가목2), 제2호가목8)

행정처분의 기준(제2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5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날과 그 행정처분 이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위반행위의 횟수를 계산한다.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처분한다.

- 1)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각각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법 제37조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제외한다)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 2) 둘 이상의 위반행위(법 제3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한 처분기준이 동일한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6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각각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을 합산하여 처분한다.
- 3) 법 제3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 둘 이상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동일한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법 제37조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한 처분기준을 우선 적용하여 처분하고, 6개월 중 나머지 기간의 범위에서 나머지 위반행위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을 합산하여 처분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기준에도 불구하고 지정취소할 수 있다.

- 1) 처분할 위반행위가 4종 이상인 경우
- 2) 처분할 위반행위가 제2호가목13)가)부터 마)까지의 행위 중 2종 이상인 경우
- 3) 삭제 〈2019. 6. 12.〉

라.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경우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정도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1) 법 제3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중 거짓으로 급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한 경우
- 2) 법 제37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 3) 삭제 <2019. 6. 12.>

2. 개별기준

가.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기준(법 제37조제1항제4호는 제외한다)

위반행위	해당 조항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받은 경우	법 제37조 제1항제1호	지정취소			
2) 법 제28조의2를 위반하여 급여 외 행위를 제공한 경우. 다만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37조 제1항제1호의2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3)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법 제37조 제1항제2호	경고	업무정지 7일	업무정지 15일	지정취소
4) 법 제32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같은 조 제7호에 해당하게 된 법인의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법 제37조 제1항제2호의2	지정취소			
5) 법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장기요양급여를 거부한 경우	법 제37조 제1항제3호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6) 법 제35조제5항을 위반하여 본인 부담금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37조 제1항제3호의2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7) 법 제35조제6항을 위반하여 수급자를 소개, 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조장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37조 제1항제3호의3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8) 법 제35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	법 제37조 제1항제3호의4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9)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하지 않고 1년 이상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법 제37조 제1항제3호의5	지정취소			

위반행위	해당 조항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10) 법 제36조의2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회계부정 행위가 있는 경우 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나) 고의 또는 중과실로 회계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다) 가)또는 나)외의 경우	법 제37조 제1항제3호의6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지정취소 지정취소	
11)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54조에 따른 평가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법 제37조 제1항제3호의7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12)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제출을 한 경우나 질문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경우	법 제37조 제1항제5호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13)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 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다만,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가) 수급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나) 수급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 다)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수급자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라) 수급자를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법 제37조 제1항제6호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1개월	지정취소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지정취소	

위반행위	해당 조항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마)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수급자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14) 업무정지기간 중에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 경우	법 제37조 제1항제7호	지정취소			
15)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 등록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이나 고유번호가 말소된 경우	법 제37조 제1항제8호	지정취소			

나. 장기요양기관이 법 제3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기준

1) 1차 및 2차 위반 시의 기준: 다음 표에 따른 업무정지

(단위 : 일)

구분	부당청구액의 비율				
월평균 부당금액	0.5% 이상 1% 미만	1% 이상 2% 미만	2% 이상 3% 미만	3% 이상 4% 미만	4% 이상 5% 미만
15만원 이상 25만원 미만			10	20	30
25만원 이상 40만원 미만		10	20	30	40
40만원 이상 80만원 미만	10	20	30	40	50
80만원 이상 240만원 미만	20	30	40	50	60
240만원 이상 840만원 미만	30	40	50	60	70
840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40	50	60	70	80
3천만원 이상	50	60	70	80	90

비고

1. 월평균 부당금액은 조사대상기간 동안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공단에게 장기요양 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금액과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수급자에게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게 한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조사대상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2. 부당청구액의 비율(%)은 (총 부당금액/장기요양급여비용총액)×100으로 산출한다.
3. 장기요양급여비용총액은 조사대상기간에 공단이 심사결정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의 합산 금액으로 한다. 다만,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가 없어 심사결정 총장기요양급여비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총 부당금액을 장기요양급여비용총액으로 본다.
4. 부당청구액의 비율이 5% 이상인 경우에는 초과 1%마다 업무정지기간을 3일씩 가산하되, 그 부당청구액의 비율의 소수점 이하는 1%로 본다. 다만, 업무정지기간을 가산하는 경우에도 총 업무정지기간은 6개월을 넘을 수 없다.

2) 3차 위반 시의 기준: 지정취소

다.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에 대한 기준

위반행위	해당 조항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이상 위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급여비용 또는 시설급여비용을 청구하는 행위에 가담한 경우	법 제37조의5제1항	장기요양급여 제공의 제한 6개월	장기요양급여 제공의 제한 제한 12개월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18. 3. 30.> [시행일 : 2018. 3. 30.]

행정처분의 기준(제2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5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날과 그 행정처분 이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위반행위의 횟수를 계산한다.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처분한다.

- 1)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각각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법 제37조 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제외한다)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 기준에 따른다.
- 2) 둘 이상의 위반행위(법 제37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한 처분기준이 동일한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6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각각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을 합산하여 처분한다.
- 3) 법 제37조제1항제4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 둘 이상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동일한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법 제37조제1항제4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한 처분기준을 우선 적용하여 처분하고, 6개월 중 나머지 기간의 범위에서 나머지 위반행위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을 합산하여 처분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기준에도 불구하고 지정취소 또는 시설폐쇄를 명할 수 있다.

- 1) 처분할 위반행위가 4종 이상인 경우
- 2) 처분할 위반행위가 제2호가목8)가)부터 다)까지의 행위 중 2종 이상인 경우
- 3) 처분할 위반행위가 제2호나목8)가)부터 다)까지의 행위 중 2종 이상인 경우

라.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경우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정도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법 제37조제1항제4호 또는 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중 거짓으로 급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한 경우
- 2) 법 제37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 3) 법 제37조제3항제3호 중 같은 조 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2. 개별기준

가.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기준(법 제37조제1항제4호는 제외한다)

위반행위	해당 조항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37조 제1항제1호	지정취소			
2)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7조 제1항제2호	경고	업무정지 7일	업무정지 15일	지정취소
3) 법 제32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32조의2제7호에 해당하게 된 법인의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대표자를 변경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 제37조 제1항제2호의2	지정취소			
4) 법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장기요양급여를 거부한 경우	법 제37조 제1항제3호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5) 법 제35조제5항을 위반하여 본인 부담금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37조 제1항제3호의2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6) 법 제35조제6항을 위반하여 수급자를 소개, 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조장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37조 제1항제3호의3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7)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제출을 한 경우나 질문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경우	법 제37조 제1항제5호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8)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 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37조 제1항제6호				
가) 수급자의 신체에 대한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위반행위	해당 조항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나) 수급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		지정취소			
다)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수급자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9) 업무정지기간 중에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 경우	법 제37조 제1항제7호	지정취소			

나. 재가장기요양기관에 대한 기준(법 제37조제3항제4호는 제외한다)

위반행위	해당 조항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37조 제3항제1호	폐쇄명령			
2)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법 제37조 제3항제2호	경고	업무정지 7일	업무정지 15일	폐쇄명령
3) 법 제32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32조의2제7호에 해당하게 된 법인의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대표자를 변경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 제37조 제3항제2호의2	폐쇄명령			
4) 법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장기요양급여를 거부한 경우	법 제37조 제3항제3호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폐쇄명령
5) 법 제35조제5항을 위반하여 본인 부담금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37조 제3항제3호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폐쇄명령	
6) 법 제35조제6항을 위반하여 수급자를 소개, 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조장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37조 제3항제3호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폐쇄명령	
7) 법 제36조의2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회계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법 제37조 제3항제6호				
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폐쇄명령	

위반행위	해당 조항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나) 고의 또는 중과실로 회계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폐쇄명령	
다) 가) 또는 나) 외의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폐쇄명령	
8)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제출을 한 경우나 질문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경우	법 제37조 제3항제3호	업무정지 6개월	폐쇄명령		
9)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 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37조 제3항제3호				
가) 수급자의 신체에 대한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업무정지 6개월	폐쇄명령		
나) 수급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		폐쇄명령			
다)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수급자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폐쇄명령	
10) 업무정지기간 중에 장기요양 급여를 제공한 경우	법 제37조 제3항제5호	폐쇄명령			

다. 장기요양기관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이 법 제37조제1항제4호 또는 같은 조 제3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기준

1) 1차 및 2차 위반 시의 기준: 다음 표에 따른 업무정지

(단위 : 일)

구분	부당청구액의 비율				
월평균 부당금액	0.5% 이상 1% 미만	1% 이상 2% 미만	2% 이상 3% 미만	3% 이상 4% 미만	4% 이상 5% 미만
15만원 이상 25만원 미만			10	20	30

구분	부당청구액의 비율				
	0.5% 이상 1% 미만	1% 이상 2% 미만	2% 이상 3% 미만	3% 이상 4% 미만	4% 이상 5% 미만
25만원 이상 40만원 미만		10	20	30	40
40만원 이상 80만원 미만	10	20	30	40	50
80만원 이상 240만원 미만	20	30	40	50	60
240만원 이상 840만원 미만	30	40	50	60	70
840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40	50	60	70	80
3천만원 이상	50	60	70	80	90

비고

1. 월평균 부당금액은 조사대상기간 동안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공단에게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금액과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수급자에게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게 한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조사대상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2. 부당청구액의 비율(%)은 (총 부당금액/장기요양급여비용총액)×100으로 산출한다.
3. 장기요양급여비용총액은 조사대상기간에 공단이 심사결정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의 합산 금액으로 한다. 다만,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가 없어 심사결정 총장기요양급여비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총 부당금액을 장기요양급여비용총액으로 본다.
4. 부당청구액의 비율이 5% 이상인 경우에는 초과 1%마다 업무정지기간을 3일씩 가산하되, 그 부당청구액의 비율의 소수점 이하는 1%로 본다. 다만, 업무정지기간을 가산하는 경우에도 총 업무정지기간은 6개월을 넘을 수 없다.

2) 3차 위반 시의 기준: 지정취소 또는 폐쇄명령

라.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에 대한 기준

위반행위	해당 조항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이상 위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급여비용 또는 시설급여비용을 청구하는 행위에 가담한 경우	법 제37조의5제1항	장기요양급여 제공의 제한 6개월	장기요양급여 제공의 제한 12개월

[별표 2] <개정 2016. 11. 7.> [시행일 : 2016. 12. 30.]

행정처분의 기준(제2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5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날과 그 행정처분 이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위반행위의 횟수를 계산한다.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처분한다.

- 1)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각각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법 제37조제1항 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제외한다)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 2) 둘 이상의 위반행위(법 제37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한 처분기준이 동일한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6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각각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을 합산하여 처분한다.
- 3) 법 제37조제1항제4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 둘 이상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동일한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법 제37조제1항제4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한 처분기준을 우선 적용하여 처분하고, 6개월 중 나머지 기간의 범위에서 나머지 위반행위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을 합산하여 처분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기준에도 불구하고 지정취소 또는 시설폐쇄를 명할 수 있다.

- 1) 처분할 위반행위가 4종 이상인 경우
- 2) 처분할 위반행위가 제2호가목8)가)부터 다)까지의 행위 중 2종 이상인 경우
- 3) 처분할 위반행위가 제2호나목8)가)부터 다)까지의 행위 중 2종 이상인 경우

라.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경우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정도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법 제37조제1항제4호 또는 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중 거짓으로 급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한 경우
- 2) 법 제37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 3) 법 제37조제3항제3호 중 같은 조 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2. 개별기준

가.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기준(법 제37조제1항제4호는 제외한다)

위반행위	해당 조항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37조 제1항제1호	지정취소			
2)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7조 제1항제2호	경고	업무정지 7일	업무정지 15일	지정취소
3) 법 제32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32조의2제7호에 해당하게 된 법인의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대표자를 변경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 제37조 제1항제2호의2	지정취소			
4) 법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장기요양급여를 거부한 경우	법 제37조 제1항제3호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5) 법 제35조제5항을 위반하여 본인 부담금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37조 제1항제3호의2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6) 법 제35조제6항을 위반하여 수급자를 소개, 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조장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37조 제1항제3호의3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7)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제출을 한 경우나 질문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경우	법 제37조 제1항제5호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위반행위	해당 조항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8)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 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가) 수급자의 신체에 대한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나) 수급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 다)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수급자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	법 제37조 제1항제6호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지정취소		
9) 업무정지기간 중에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 경우	법 제37조 제1항제7호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지정취소			

나. 재가장기요양기관에 대한 기준(법 제37조제3항제4호는 제외한다)

위반행위	해당 조항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37조 제3항제1호	폐쇄명령			
2)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법 제37조 제3항제2호	경고	업무정지 7일	업무정지 15일	폐쇄명령
3) 법 제32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32조의2제7호에 해당하게 된 법인의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대표자를 변경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 제37조 제3항제2호의2	폐쇄명령			
4) 법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장기요양급여를 거부한 경우	법 제37조 제3항제3호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폐쇄명령
5) 법 제35조제5항을 위반하여 본인 부담금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37조 제3항제3호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폐쇄명령	

위반행위	해당 조항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6) 법 제35조제6항을 위반하여 수급자를 소개, 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조장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37조 제3항제3호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폐쇄명령	
7)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제출을 한 경우나 질문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경우	법 제37조 제3항제3호	업무정지 6개월	폐쇄명령		
8)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 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가) 수급자의 신체에 대한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나) 수급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 다)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수급자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법 제37조 제3항제3호	업무정지 6개월 폐쇄명령 업무정지 3개월	폐쇄명령 업무정지 6개월	 폐쇄명령	
9) 업무정지기간 중에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 경우	법 제37조 제3항제5호	폐쇄명령			

다. 장기요양기관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이 법 제37조제1항제4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기준

1) 1차 위반 시의 기준: 다음 표에 따른 업무정지

(단위 : 일)

구분	부당청구액의 비율				
월평균 부당금액	0.5% 이상 1% 미만	1% 이상 2% 미만	2% 이상 3% 미만	3% 이상 4% 미만	4% 이상 5% 미만
15만원 이상 25만원 미만			10	20	30
25만원 이상 40만원 미만		10	20	30	40
40만원 이상 80만원 미만	10	20	30	40	50
80만원 이상 240만원 미만	20	30	40	50	60
240만원 이상 840만원 미만	30	40	50	60	70
840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40	50	60	70	80
3천만원 이상	50	60	70	80	90

비고

1. 월평균 부당금액은 조사대상기간 동안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공단에게 장기요양 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금액과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수급자에게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게 한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조사대상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2. 부당청구액의 비율(%)은 (총 부당금액/장기요양급여비용총액)×100으로 산출한다.
3. 장기요양급여비용총액은 조사대상기간에 공단이 심사결정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의 합산 금액으로 한다. 다만,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가 없어 심사결정 총장기요양급여비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총 부당금액을 장기요양급여비용총액으로 본다.
4. 부당청구액의 비율이 5% 이상인 경우에는 초과 1%마다 업무정지기간을 3일씩 가산하되, 그 부당청구액의 비율의 소수점 이하는 1%로 본다. 다만, 업무정지기간을 가산하는 경우에도 총 업무정지기간은 6개월을 넘을 수 없다.

2) 2차 위반 시의 기준: 지정취소 또는 폐쇄명령

라.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에 대한 기준

위반행위	해당 조항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이상 위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급여비용 또는 시설급여비용을 청구하는 행위에 가담한 경우	법 제37조의5제1항	장기요양급여 제공의 제한 6개월	장기요양급여 제공의 제한 12개월

[별표 2] 〈개정 2014.2.14〉 [시행일 : 2014. 2. 14.]

행정처분의 기준(제2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5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날과 그 행정처분 이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위반행위의 횟수를 계산한다.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처분한다.

- 1)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각각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법 제37조 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제외한다)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 2) 둘 이상의 위반행위(법 제37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한 처분기준이 동일한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6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각각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을 합산하여 처분한다.
- 3) 법 제37조제1항제4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 둘 이상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동일한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법 제37조제1항제4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한 처분기준을 우선 적용하여 처분하고, 6개월 중 나머지 기간의 범위에서 나머지 위반행위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을 합산하여 처분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기준에도 불구하고 지정취소 또는 시설폐쇄를 명할 수 있다.

- 1) 처분할 위반행위가 4종 이상인 경우
- 2) 처분할 위반행위가 제2호가목7)가)부터 다)까지의 행위 중 2종 이상인 경우
- 3) 처분할 위반행위가 제2호나목7)가)부터 다)까지의 행위 중 2종 이상인 경우

라.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경우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정도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법 제37조제1항제4호 또는 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중 거짓으로 급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한 경우
- 2) 법 제37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 3) 법 제37조제3항제3호 중 같은 조 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2. 개별기준

가.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기준(법 제37조제1항제4호는 제외한다)

위반행위	해당 조항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37조 제1항제1호	지정취소			
2)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7조 제1항제2호	경고	업무정지 7일	업무정지 15일	지정취소
3) 법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장기요양급여를 거부한 경우	법 제37조 제1항제3호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4) 법 제35조제5항을 위반하여 본인 부담금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37조 제1항제3호의2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5) 법 제35조제6항을 위반하여 수급자를 소개, 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조장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37조 제1항제3호의3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6)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제출을 한 경우나 질문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경우	법 제37조 제1항제5호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7)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 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37조 제1항제6호				
가) 수급자의 신체에 대한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나) 수급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		지정취소			
다)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수급자를 유기하거나 의사주를 포함한 기본적인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행위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8) 업무정지기간 중에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 경우	법 제37조 제1항제7호	지정취소			

나. 재가장기요양기관에 대한 기준(법 제37조제3항제4호는 제외한다)

위반행위	해당 조항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37조 제3항제1호	폐쇄명령			
2)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법 제37조 제3항제2호	경고	업무정지 7일	업무정지 15일	폐쇄명령
3) 법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장기요양급여를 거부한 경우	법 제37조 제3항제3호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폐쇄명령
4) 법 제35조제5항을 위반하여 본인 부담금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37조 제3항제3호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폐쇄명령	
5) 법 제35조제6항을 위반하여 수급자를 소개, 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조장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37조 제3항제3호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폐쇄명령	
6)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제출을 한 경우나 질문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경우	법 제37조 제3항제3호	업무정지 6개월	폐쇄명령		
7)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 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37조 제3항제3호				
가) 수급자의 신체에 대한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업무정지 6개월	폐쇄명령		
나) 수급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		폐쇄명령			
다)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수급자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폐쇄명령	
8) 업무정지기간 중에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 경우	법 제37조 제3항제5호	폐쇄명령			

다. 장기요양기관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이 법 제37조제1항제4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기준

1) 1차 및 2차 위반 시의 기준: 다음 표에 따른 업무정지

(단위 : 일)

구분 월평균 부당금액	부당청구액의 비율				
	0.5% 이상 1% 미만	1% 이상 2% 미만	2% 이상 3% 미만	3% 이상 4% 미만	4% 이상 5% 미만
15만원 이상 25만원 미만			10	20	30
25만원 이상 40만원 미만		10	20	30	40
40만원 이상 80만원 미만	10	20	30	40	50
80만원 이상 240만원 미만	20	30	40	50	60
240만원 이상 840만원 미만	30	40	50	60	70
840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40	50	60	70	80
3천만원 이상	50	60	70	80	90

비고

1. 월평균 부당금액은 조사대상기간 동안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공단에게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금액과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수급자에게 본인 부담금을 부담하게 한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조사대상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2. 부당청구액의 비율(%)은(총 부당금액/장기요양급여비용총액)×100으로 산출한다.
 3. 장기요양급여비용총액은 조사대상기간에 공단이 심사결정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의 합산 금액으로 한다. 다만,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가 없어 심사결정 총장기요양급여비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총 부당금액을 장기요양급여비용총액으로 본다.
 4. 부당청구액의 비율이 5% 이상인 경우에는 초과 1%마다 업무정지기간을 3일씩 가산하되, 그 부당청구액의 비율의 소수점 이하는 1%로 본다. 다만, 업무정지기간을 가산하는 경우에도 총 업무정지기간은 6개월을 넘을 수 없다.
- 2) 3차 위반 시의 기준: 지정취소 또는 폐쇄명령

[별표 2] <개정 2013.10.22> [시행일 : 2013.10.22.]

행정처분의 기준(제29조 관련)

I. 장기요양기관 지정취소기준

위반행위	해당 조항	지정취소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37조제1항제1호	지정취소	
2.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7조제1항제2호	경 고	지정취소
3. 법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장기요양급여를 거부한 경우	법 제37조제1항제3호	경 고	지정취소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 중 부당청구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가. 부당청구액의 비율이 2퍼센트 미만인 경우 나. 부당청구액의 비율이 2퍼센트 이상인 경우	법 제37조제1항제4호 법 제37조제1항제4호	경고 지정취소	지정취소
5.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에 따른 질문·검사 및 자료의 제출 요구를 거부·방해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 제37조제1항제5호	경 고	지정취소
6.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 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가. 수급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나. 수급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 다.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수급자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법 제37조제1항제6호	경 고	지정취소

비고: 1) 부당청구액의 비율(퍼센트)은 (대상기간의 총부당금액/대상기간의 장기요양급여비용총액) × 100으로 산출한다. 다만, 대상기간은 최소 1개월로 한다.

2)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5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II. 재가장기요양기관 영업정지 및 폐쇄명령기준

위반행위	해당 조항	영업정지 또는 폐쇄명령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37조 제3항제1호	폐쇄 명령			
2.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법 제37조 제3항제2호	경고	영업 정지 7일	영업 정지 15일	폐쇄 명령
3. 법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장기요양 급여를 거부한 경우	법 제37조 제3항제3호	경고	영업 정지 7일	영업 정지 15일	폐쇄 명령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 중 부당청구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가. 부당청구액의 비율이 2퍼센트 미만인 경우 나. 부당청구액의 비율이 2퍼센트 이상 3퍼센트 미만인 경우 다. 부당청구액의 비율이 3퍼센트 이상 4퍼센트 미만인 경우 라. 부당청구액의 비율이 4퍼센트 이상 5퍼센트 미만인 경우	법 제37조 제3항제3호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30일	영업 정지 60일	폐쇄 명령	
5. 법 제60조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구를 거부·방해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 제37조 제3항제3호	경고	영업 정지 7일	영업 정지 15일	폐쇄 명령
6. 법 제61조에 따른 질문·검사 및 자료의 제출요구를 거부·방해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 제37조 제3항제3호	경고	폐쇄 명령		
7.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 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가. 수급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법 제37조 제3항제3호	경고	영업 정지 7일	영업 정지 15일	폐쇄 명령

위반행위	해당 조항	영업정지 또는 폐쇄명령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나. 수급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 다.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수급자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 비고 : 1) 부당청구액의 비율(퍼센트)은 (대상기간의 총부당금액/대상기간의 장기요양급여비용총액) × 100으로 산출한다. 다만, 대상기간은 최소 1개월로 한다.
- 2) 부당청구액이 5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초과 1퍼센트마다 영업정지기간을 3일씩 가산하되, 소수점 이하의 부당비율은 1퍼센트로 본다.
- 3)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5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별표 2] <개정 2010.2.24> [시행일 : 2010. 3. 1.]

행정처분의 기준(제29조 관련)

I. 장기요양기관 지정취소기준

위반행위	해당 조항	지정취소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37조제1항제1호	지정취소	
2.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7조제1항제2호	경 고	지정취소
3. 법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장기요양급여를 거부한 경우	법 제37조제1항제3호	경 고	지정취소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 가. 부당청구액의 비율이 2퍼센트 미만인 경우 나. 부당청구액의 비율이 2퍼센트 이상인 경우	법 제37조제1항제4호 법 제37조제1항제4호	경고 지정취소	지정취소
5.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에 따른 질문·검사 및 자료의 제출 요구를 거부·방해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 제37조제1항제5호	경 고	지정취소
6.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 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가. 수급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나. 수급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 다.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수급자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법 제37조제1항제6호	경 고	지정취소

비고: 1) 부당청구액의 비율(퍼센트)은(대상기간의 총부당금액/대상기간의 장기요양급여비용총액) × 100으로 산출한다. 다만, 대상기간은 최소 1개월로 한다.

2)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5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II. 재가장기요양기관 영업정지 및 폐쇄명령기준

위반행위	해당 조항	영업정지 또는 폐쇄명령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37조 제3항제1호	폐쇄 명령			
2.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법 제37조 제3항제2호	경고	영업 정지 7일	영업 정지 15일	폐쇄 명령
3. 법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장기요양 급여를 거부한 경우	법 제37조 제3항제3호	경고	영업 정지 7일	영업 정지 15일	폐쇄 명령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 가. 부당청구액의 비율이 2퍼센트 미만인 경우 나. 부당청구액의 비율이 2퍼센트 이상 3퍼센트 미만인 경우 다. 부당청구액의 비율이 3퍼센트 이상 4퍼센트 미만인 경우 라. 부당청구액의 비율이 4퍼센트 이상 5퍼센트 미만인 경우	법 제37조 제3항제3호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30일	영업 정지 60일	폐쇄 명령	
5. 법 제60조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구를 거부·방해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 제37조 제3항제3호	경고	영업 정지 7일	영업 정지 15일	폐쇄 명령
6. 법 제61조에 따른 질문·검사 및 자료의 제출요구를 거부·방해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 제37조 제3항제3호	경고	폐쇄 명령		
7.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 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가. 수급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법 제37조 제3항제3호	경고	영업 정지 7일	영업 정지 15일	폐쇄 명령

위반행위	해당 조항	영업정지 또는 폐쇄명령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나. 수급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 다.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수급자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비고 : 1) 부당청구액의 비율(퍼센트)은 (대상기간의 총부당금액/대상기간의 장기요양급여비용총액) × 100으로 산출한다. 다만, 대상기간은 최소 1개월로 한다.

2) 부당청구액이 5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초과 1퍼센트마다 영업정지기간을 3일씩 가산하되, 소수점 이하의 부당비율은 1퍼센트로 본다.

3)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5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붙임 2-1] 과징금 부과 기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19. 6. 11.>

[시행일: 2019. 12. 12.]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시행일: 2019. 6. 12.] 제1호(법 제37조제1항제1호의2 및 제3호의4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과징금 부과 기준(제15조 관련)

1. 법 제37조제1항제1호의2·제2호·제3호·제3호의2·제3호의3·제3호의4·제3호의6·제3호의7·제5호·제6호(제6호의 경우 법 제37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의 과징금 부과 기준
 - 가. 과징금의 금액은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업무정지기간(가중 또는 감경을 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가중 또는 감경된 기간을 말하며, 업무정지 1개월은 30일로 산정한다. 이하 같다)에 다목의 업무정지 1일당 과징금 금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 나. 가목에 따라 산정한 과징금 금액이 2억원을 넘는 경우 과징금 금액은 2억원으로 한다.
 - 다. 업무정지 1일당 과징금 금액은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별로 장기요양기관을 다음 표와 같이 구분하여 그 장기요양기관의 연간 총 수입금액별로 정한 업무정지 1일당 과징금 금액으로 한다.

등급	연간 총 수입금액(단위: 백만원)				업무정지 1일당 과징금 금액 (단위: 천원)
	법 제23조제1항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재가급 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법 제23조제1항제 1호라목 및 마목에 따른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 기요양기관	법 제23조제1항 제1호바목에 따른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 기요양기관	법 제23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1	20 이하	20 이하	20 이하		55
2	20 초과 30 이하	20 초과 30 이하	20 초과 30 이하	30 이하	90
3	30 초과 40 이하	30 초과 40 이하	30 초과 40 이하	30 초과 40 이하	130
4	40 초과 50 이하	40 초과 50 이하	40 초과 50 이하	40 초과 50 이하	160
5	50 초과 60 이하	50 초과 60 이하	50 초과 60 이하	50 초과 60 이하	200

등 급	연간 총 수입금액(단위: 백만원)				업무정지 1일당 과징금 금액 (단위: 천원)
	법 제23조제1항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재가급 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법 제23조제1항제 1호라목 및 마목에 따른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 기요양기관	법 제23조제1항 제1호바목에 따른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 기요양기관	법 제23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6	60 초과 70 이하	60 초과 70 이하	60 초과 70 이하	60 초과 70 이하	230
7	70 초과 80 이하	70 초과 80 이하	70 초과 80 이하	70 초과 80 이하	260
8	80 초과 90 이하	80 초과 90 이하	80 초과 90 이하	80 초과 90 이하	300
9	90 초과 100 이하	90 초과 100 이하	90 초과 100 이하	90 초과 100 이하	330
10	100 초과 120 이하	100 초과 120 이하	100 초과 120 이하	100 초과 120 이하	350
11	120 초과 140 이하	120 초과 140 이하	120 초과 140 이하	120 초과 140 이하	410
12	140 초과 160 이하	140 초과 160 이하	140 초과 160 이하	140 초과 160 이하	460
13	160 초과 180 이하	160 초과 180 이하	160 초과 180 이하	160 초과 180 이하	530
14	180 초과 200 이하	180 초과 200 이하	180 초과 200 이하	180 초과 200 이하	591
15	200 초과 300 이하	200 초과 300 이하	200 초과 300 이하	200 초과 300 이하	778
16	300 초과 400 이하	300 초과 400 이하	300 초과 400 이하	300 초과 400 이하	1,090
17	400 초과 500 이하	400 초과 500 이하	400 초과 500 이하	400 초과 500 이하	1,400
18	500 초과 600 이하	500 초과 600 이하	500 초과 600 이하	500 초과 600 이하	1,710
19	600 초과 700 이하	600 초과 700 이하	600 초과 700 이하	600 초과 700 이하	2,030
20	700 초과 800 이하	700 초과 800 이하	700 초과 800 이하	700 초과 800 이하	2,340
21	800 초과 900 이하	800 초과 900 이하	800 초과 900 이하	800 초과 900 이하	2,670
22	900 초과 1000 이하	900 초과 1000 이하	900 초과 1000 이하	900 초과 1000 이하	2,960
23	1000 초과 1200 이하	1000 초과	1000 초과 1200 이하	1000 초과 1200 이하	3,440
24	1200 초과 1400 이하		1200 초과 1400 이하	1200 초과 1400 이하	4,020
25	1400 초과 1600 이하		1400 초과 1600 이하	1400 초과 1600 이하	4,680
26	1600 초과 1800 이하		1600 초과 1800 이하	1600 초과 1800 이하	5,300
27	1800 초과 2000 이하		1800 초과 2000 이하	1800 초과 2000 이하	5,880

등급	연간 총 수입금액(단위: 백만원)				업무정지 1일당 과징금 금액 (단위: 천원)
	법 제23조제1항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재가급 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법 제23조제1항제 1호라목 및 마목에 따른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 기요양기관	법 제23조제1항 제1호바목에 따른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 기요양기관	법 제23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28	2000 초과		2000 초과	2000 초과 2200 이하	6,620
29				2200 초과 2500 이하	7,280
30				2500 초과 3000 이하	8,560
31				3000 초과	11,590

비고

- 총 수입금액은 장기요양사업으로 해당 장기요양기관이 공단에서 지급받은 장기요양급여비용의 금액과 수급자로부터 받은 본인일부부담금 금액의 합계로 한다.
 - 연간 총 수입금액은 해당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 1년간의 총 수입금액으로 한다. 다만, 신규 개설, 휴업 또는 재 개설 등으로 전년도 1년간의 총 수입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근의 분기별, 월별 또는 일별 수입금액을 기초로 연간 총 수입금액을 산출한다.
 - 과징금 부과 대상 장기요양기관이 위 표의 구분에 따른 두 종류 이상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인 경우 먼저 그 각각의 연간 총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각각의 과징금을 산정한 후, 그 각각의 과징금을 합하여 해당 과징금 부과 대상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과징금의 총 금액을 산정한다.
2. 법 제3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과징금 부과 기준.
- 과징금의 금액은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업무정지기간별로 법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청구된 재가급여 및 시설급여의 비용(이하 "부당금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 업무정지기간이 10일 이하인 경우: 총 부당금액의 2배
 - 업무정지기간이 10일 초과 30일 이하인 경우: 총 부당금액의 3배
 - 업무정지기간이 30일 초과 50일 이하인 경우: 총 부당금액의 4배
 - 업무정지기간이 50일을 초과하는 경우: 총 부당금액의 5배

[별표 2] <개정 2018. 9. 11.> [시행일: 2018. 9. 14.], [시행일: 2018. 9. 11.] 제1호나목

과징금 부과 기준(제15조 관련)

1. 법 제37조제1항제2호·제3호·제3호의2·제3호의3·제5호·제6호(제6호의 경우 법 제37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법 제37조제3항제2호·제3호(제3호의 경우 법 제37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37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의 과징금 부과 기준
 - 가. 과징금의 금액은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업무정지기간(가중 또는 감경을 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가중 또는 감경된 기간을 말하며, 업무정지 1개월은 30일로 산정한다. 이하 같다)에 다목의 업무정지 1일당 과징금 금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 나. 가목에 따라 산정한 과징금 금액이 2억원을 넘는 경우 과징금 금액은 2억원으로 한다.
 - 다. 업무정지 1일당 과징금 금액은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별로 장기요양기관을 다음 표와 같이 구분하여 그 장기요양기관의 연간 총 수입금액별로 정한 업무정지 1일당 과징금 금액으로 한다.

등급	연간 총 수입금액(단위: 백만원)				업무정지 1일당 과징금 금액 (단위: 천원)
	법 제23조제1항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 기요양기관	법 제23조제1항제1호 라목 및 마목에 따른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법 제23조제1항 제1호 바목에 따른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법 제23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시설 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1	20 이하	20 이하	20 이하		55
2	20 초과 30 이하	20 초과 30 이하	20 초과 30 이하	30 이하	90
3	30 초과 40 이하	30 초과 40 이하	30 초과 40 이하	30 초과 40 이하	130
4	40 초과 50 이하	40 초과 50 이하	40 초과 50 이하	40 초과 50 이하	160
5	50 초과 60 이하	50 초과 60 이하	50 초과 60 이하	50 초과 60 이하	200
6	60 초과 70 이하	60 초과 70 이하	60 초과 70 이하	60 초과 70 이하	230
7	70 초과 80 이하	70 초과 80 이하	70 초과 80 이하	70 초과 80 이하	260
8	80 초과 90 이하	80 초과 90 이하	80 초과 90 이하	80 초과 90 이하	300
9	90 초과 100 이하	90 초과 100 이하	90 초과 100 이하	90 초과 100 이하	330
10	100 초과 120 이하	100 초과 120 이하	100 초과 120 이하	100 초과 120 이하	350
11	120 초과 140 이하	120 초과 140 이하	120 초과 140 이하	120 초과 140 이하	410

비고	연간 총 수입금액(단위: 백만원)				업무정지 1일당 과징금 금액 (단위: 천원)
	법 제23조제1항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 기요양기관	법 제23조제1항제1호 라목 및 마목에 따른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법 제23조제1항 제1호 바목에 따른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법 제23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시설 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12	140 초과 160 이하	140 초과 160 이하	140 초과 160 이하	140 초과 160 이하	460
13	160 초과 180 이하	160 초과 180 이하	160 초과 180 이하	160 초과 180 이하	530
14	180 초과 200 이하	180 초과 200 이하	180 초과 200 이하	180 초과 200 이하	591
15	200 초과 300 이하	200 초과 300 이하	200 초과 300 이하	200 초과 300 이하	778
16	300 초과 400 이하	300 초과 400 이하	300 초과 400 이하	300 초과 400 이하	1,090
17	400 초과 500 이하	400 초과 500 이하	400 초과 500 이하	400 초과 500 이하	1,400
18	500 초과 600 이하	500 초과 600 이하	500 초과 600 이하	500 초과 600 이하	1,710
19	600 초과 700 이하	600 초과 700 이하	600 초과 700 이하	600 초과 700 이하	2,030
20	700 초과 800 이하	700 초과 800 이하	700 초과 800 이하	700 초과 800 이하	2,340
21	800 초과 900 이하	800 초과 900 이하	800 초과 900 이하	800 초과 900 이하	2,670
22	900 초과 1000 이하	900 초과 1000 이하	900 초과 1000 이하	900 초과 1000 이하	2,960
23	1000 초과 1200 이하	1000 초과	1000 초과 1200 이하	1000 초과 1200 이하	3,440
24	1200 초과 1400 이하		1200 초과 1400 이하	1200 초과 1400 이하	4,020
25	1400 초과 1600 이하		1400 초과 1600 이하	1400 초과 1600 이하	4,680
26	1600 초과 1800 이하		1600 초과 1800 이하	1600 초과 1800 이하	5,300
27	1800 초과 2000 이하		1800 초과 2000 이하	1800 초과 2000 이하	5,880
28	2000 초과		2000 초과	2000 초과 2200 이하	6,620
29				2200 초과 2500 이하	7,280
30				2500 초과 3000 이하	8,560
31				3000 초과	11,590

비고

1. 총 수입금액은 장기요양사업으로 해당 장기요양기관이 공단에서 지급받은 장기요양급여비용의 금액과 수급자로부터 받은 본인일부부담금 금액의 합계로 한다.
2. 연간 총 수입금액은 해당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 1년간의 총 수입금액으로 한다. 다만, 신규 개설, 휴업 또는 재 개설 등으로 전년도 1년간의 총 수입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근의 분기별, 월별 또는 일별 수입금액을 기초로 연간 총 수입금액을 산출한다.
3. 과징금 부과 대상 장기요양기관이 위 표의 구분에 따른 두 종류 이상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인 경우 먼저 그 각각의 연간 총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각각의 과징금을 산정한 후, 그 각각의 과징금을 합하여 해당 과징금 부과 대상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과징금의 총 금액을 산정한다.

2. 법 제37조제1항제4호 또는 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과징금 부과 기준
과징금의 금액은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업무정지기간별로 법 제37조제1항제4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제4호에 따라 청구된 재가급여 및 시설급여의 비용(이하 "부당금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 가. 업무정지기간이 10일 이하인 경우: 총 부당금액의 2배
 - 나. 업무정지기간이 10일 초과 30일 이하인 경우: 총 부당금액의 3배
 - 다. 업무정지기간이 30일 초과 50일 이하인 경우: 총 부당금액의 4배
 - 라. 업무정지기간이 50일을 초과하는 경우: 총 부당금액의 5배

[별표 2] <개정 2014.2.11> [시행일: 2014. 2. 14.]

과징금 부과 기준(제15조 관련)

1. 법 제37조제1항제2호·제3호·제3호의2·제3호의3·제5호·제6호(제6호의 경우 법 제37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법 제37조제3항제2호·제3호(제3호의 경우 법 제37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37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의 과징금 부과 기준
 - 가. 과징금의 금액은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업무정지기간(가중 또는 감경을 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가중 또는 감경된 기간을 말하며, 업무정지 1개월은 30일로 산정한다. 이하 같다)에 다목의 업무정지 1일당 과징금 금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 나. 가목에 따라 산정한 과징금 금액이 5천만원을 넘는 경우 과징금 금액은 5천만원으로 한다.
 - 다. 업무정지 1일당 과징금 금액은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별로 장기요양기관을 다음 표와 같이 구분하여 그 장기요양기관의 연간 총 수입금액별로 정한 업무정지 1일당 과징금 금액으로 한다.

등급	연간 총 수입금액(단위: 백만원)				업무정지 1일당 과징금 금액 (단위: 천원)
	법 제23조제1항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 른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법 제23조제1항제1호 라목 및 마목에 따른 재 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 요양기관	법 제23조제1항 제1호 바목에 따른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법 제23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시설 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1	20 이하	20 이하	20 이하		55
2	20 초과 30 이하	20 초과 30 이하	20 초과 30 이하	30 이하	90
3	30 초과 40 이하	30 초과 40 이하	30 초과 40 이하	30 초과 40 이하	130
4	40 초과 50 이하	40 초과 50 이하	40 초과 50 이하	40 초과 50 이하	160
5	50 초과 60 이하	50 초과 60 이하	50 초과 60 이하	50 초과 60 이하	200
6	60 초과 70 이하	60 초과 70 이하	60 초과 70 이하	60 초과 70 이하	230
7	70 초과 80 이하	70 초과 80 이하	70 초과 80 이하	70 초과 80 이하	260
8	80 초과 90 이하	80 초과 90 이하	80 초과 90 이하	80 초과 90 이하	300
9	90 초과 100 이하	90 초과 100 이하	90 초과 100 이하	90 초과 100 이하	330

비고 단위	연간 총 수입금액(단위: 백만원)				업무정지 1일당 과징금 금액 (단위: 천원)
	법 제23조제1항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 른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법 제23조제1항제1호 라목 및 마목에 따른 재 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 요양기관	법 제23조제1항 제1호 바목에 따른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법 제23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시설 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10	100 초과 120 이하	100 초과 120 이하	100 초과 120 이하	100 초과 120 이하	350
11	120 초과 140 이하	120 초과 140 이하	120 초과 140 이하	120 초과 140 이하	410
12	140 초과 160 이하	140 초과 160 이하	140 초과 160 이하	140 초과 160 이하	460
13	160 초과 180 이하	160 초과 180 이하	160 초과 180 이하	160 초과 180 이하	530
14	180 초과 200 이하	180 초과 200 이하	180 초과 200 이하	180 초과 200 이하	591
15	200 초과 300 이하	200 초과 300 이하	200 초과 300 이하	200 초과 300 이하	778
16	300 초과 400 이하	300 초과 400 이하	300 초과 400 이하	300 초과 400 이하	1,090
17	400 초과 500 이하	400 초과 500 이하	400 초과 500 이하	400 초과 500 이하	1,400
18	500 초과 600 이하	500 초과 600 이하	500 초과 600 이하	500 초과 600 이하	1,710
19	600 초과 700 이하	600 초과 700 이하	600 초과 700 이하	600 초과 700 이하	2,030
20	700 초과 800 이하	700 초과 800 이하	700 초과 800 이하	700 초과 800 이하	2,340
21	800 초과 900 이하	800 초과 900 이하	800 초과 900 이하	800 초과 900 이하	2,670
22	900 초과 1000 이하	900 초과 1000 이하	900 초과 1000 이하	900 초과 1000 이하	2,960
23	1000 초과 1200 이하	1000 초과	1000 초과 1200 이하	1000 초과 1200 이하	3,440
24	1200 초과 1400 이하		1200 초과 1400 이하	1200 초과 1400 이하	4,020
25	1400 초과 1600 이하		1400 초과 1600 이하	1400 초과 1600 이하	4,680
26	1600 초과 1800 이하		1600 초과 1800 이하	1600 초과 1800 이하	5,300
27	1800 초과 2000 이하		1800 초과 2000 이하	1800 초과 2000 이하	5,880
28	2000 초과		2000 초과	2000 초과 2200 이하	6,620
29				2200 초과 2500 이하	7,280
30				2500 초과 3000 이하	8,560
31				3000 초과	11,590

비고

1. 총 수입금액은 장기요양사업으로 해당 장기요양기관이 공단에서 지급받은 장기요양급여비용의 금액과 수급자로부터 받은 본인일부부담금 금액의 합계로 한다.
2. 연간 총 수입금액은 해당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 1년간의 총 수입금액으로 한다. 다만, 신규 개설, 휴업 또는 재 개설 등으로 전년도 1년간의 총 수입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근의 분기별, 월별 또는 일별 수입금액을 기초로 연간 총 수입금액을 산출한다.

3. 과징금 부과 대상 장기요양기관이 위 표의 구분에 따른 두 종류 이상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인 경우 먼저 그 각각의 연간 총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각각의 과징금을 산정한 후, 그 각각의 과징금을 합하여 해당 과징금 부과 대상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과징금의 총 금액을 산정한다.
2. 법 제37조제1항제4호 또는 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과징금 부과 기준
과징금의 금액은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업무정지기간별로 법 제37조제1항제4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제4호에 따라 청구된 재가급여 및 시설급여의 비용(이하 "부당금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 가. 업무정지기간이 10일 이하인 경우: 총 부당금액의 2배
 - 나. 업무정지기간이 10일 초과 30일 이하인 경우: 총 부당금액의 3배
 - 다. 업무정지기간이 30일 초과 50일 이하인 경우: 총 부당금액의 4배
 - 라. 업무정지기간이 50일을 초과하는 경우: 총 부당금액의 5배

[붙임 2-2] 재지정 및 재신고 금지기간

[별표 2] 〈개정 2008.6.11〉 [시행일: 2008. 6. 11.]

재지정 및 재신고 금지기간(제15조 관련)

1. 지정취소 된 장기요양기관의 재지정 금지기간

지정취소의 사유	해당 조항	기간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37조제1항제1호	6개월
2.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7조제1항제2호	2개월
3. 법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장기요양급여를 거부한 경우	법 제37조제1항제3호	3개월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급여 비용을 청구한 경우		
가. 부당청구액의 비율이 2퍼센트 미만인 경우	법 제37조제1항제4호	2개월
나. 부당청구액의 비율이 2퍼센트 이상인 경우	법 제37조제1항제4호	4개월
5.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에 따른 질문·검사 및 자료의 제출요구를 거부·방해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 제37조제1항제5호	2개월
6.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 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37조제1항제6호	
가. 수급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나. 수급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		
다.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수급자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행위		6개월

비고

1. 부당청구액의 비율(퍼센트)은 (대상기간의 총부당금액/대상기간의 장기요양급여비용총액) × 100으로 산출한다. 다만, 대상기간은 최소 1개월로 한다.
2. 지정취소처분을 받은 자가 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로 다시 지정취소처분을 받으면 그 재지정 금지기간을 2배로 한다.

2. 폐쇄명령을 받은 재가장기요양기관 재신고 금지기간

폐쇄명령의 사유	해당 조항	기간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37조제3항제1호	6개월
2.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법 제37조제3항제2호	2개월
3. 법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장기요양급여를 거부한 경우	법 제37조제3항제3호	3개월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	법 제37조제3항제3호	4개월
5.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에 따른 질문·검사 및 자료의 제출 요구를 거부·방해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 제37조제3항제3호	2개월
6.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 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가. 수급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나. 수급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 다.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수급자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법 제37조제3항제3호	6개월

비고

폐쇄명령처분을 받은 자가 폐쇄명령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로 다시 폐쇄명령을 받으면 그 재신고 금지기간을 2배로 한다.

[붙임 3] 과태료 부과기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0. 9. 29.〉 [시행일 : 2020. 10. 1.]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9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동일한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그 부과처분 이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른 제2호의 과태료 금액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다만, 합산하는 경우에도 법 제69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마.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69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법 위반상태인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33조를 위반하여 변경지정을 받지 않거나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지정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	법 제69조 제1항제2호	50	100	200
나. 법 제34조를 위반하여 장기요양기관에 관한 정보를 게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게시한 경우	법 제69조 제1항제2호의2	50	100	200
다. 법 제35조제3항을 위반하여 수급자에게 장기요양 급여비용에 대한 명세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교부한 경우	법 제69조 제1항제2호의3	50	100	200
라. 법 제35조제4항을 위반하여 장기요양급여 제공 자료를 기록·관리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법 제69조 제1항제3호	50	100	200
마. 법 제35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	법 제69조 제1항제3호의2	100	200	300
바. 법 제36조제1항 또는 제6항을 위반하여 폐업·휴업 신고 또는 자료이관을 하지 않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69조 제1항제4호	50	100	200
사. 법 제37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행정제재처분을 받았거나 그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양수인등에게 지체 없이 알리지 않은 경우	법 제69조 제1항제4호의2	500		
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경우	법 제69조 제1항제6호	100	200	300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자. 법 제60조 또는 법 제61조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 요구·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경우나 질문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경우	법 제69조 제1항제7호			
1) 법 제60조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제출을 한 경우		100	200	300
2) 법 제61조제1항·제2항(장기요양기관은 제외한다)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경우나 질문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경우		150	300	500
차.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에 가담한 경우	법 제69조 제1항제8호	100	200	300
카. 법 제62조의2를 위반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또는 이와 유사한 용어를 사용한 경우	법 제69조 제1항제9호	50	100	200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19. 6. 11.>

[시행일 : 2019. 6. 11.] 제2호카목

[시행일 : 2019. 6. 12.] 제2호마목

[시행일 : 2019. 12. 12.] 제2호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9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동일한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그 부과처분 이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른 제2호의 과태료 금액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다만, 합산하는 경우에도 법 제69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마.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69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법 위반상태인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33조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69조 제1항제2호	50	100	200
나. 법 제34조를 위반하여 장기요양기관에 관한 정보를 게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게시한 경우	법 제69조 제1항제2호의2	50	100	200
다. 법 제35조제3항을 위반하여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 비용에 대한 명세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교부한 경우	법 제69조 제1항제2호의3	50	100	200
라. 법 제35조제4항을 위반하여 장기요양급여 제공 자료를 기록·관리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법 제69조 제1항제3호	50	100	200
마. 법 제35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	법 제69조 제1항제3호의2	100	200	300
바. 법 제36조제1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폐업·휴업 신고 또는 자료이관을 하지 않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69조 제1항제4호	50	100	200
사. 법 제37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행정제재처분을 받았거나 그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양수인등에게 지체 없이 알리지 않은 경우	법 제69조 제1항제4호의2	500		
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경우	법 제69조 제1항제6호	100	200	300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자. 법 제60조 또는 법 제61조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 요구·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경우나 질문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경우	법 제69조 제1항제7호			
1) 법 제60조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제출을 한 경우		100	200	300
2) 법 제61조제1항·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경우나 질문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경우		150	300	500
차.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에 가담한 경우	법 제69조제1항제8호	100	200	300
카. 법 제62조의2를 위반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또는 이와 유사한 용어를 사용한 경우	법 제69조제1항제9호	50	100	200

[별표 3] <개정 2016. 11. 8.> [시행일 : 2017. 1. 1.]

[시행일 : 2016. 12. 30.] 제2호 라목, 자목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9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동일한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그 부과처분 이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른 제2호의 과태료 금액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다만, 합산하는 경우에도 법 제69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69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법 위반상태인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33조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69조 제1항제2호	50	100	200
나. 법 제34조를 위반하여 장기요양기관에 관한 정보를 게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게시한 경우	법 제69조 제1항제2호의2	50	100	200
다. 법 제35조제3항을 위반하여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비용에 대한 명세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교부한 경우	법 제69조 제1항제2호의3	50	100	200
라. 법 제35조제4항을 위반하여 장기요양급여 제공 자료를 기록·관리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법 제69조 제1항제3호	50	100	200
마. 법 제36조제1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폐업·휴업 신고 또는 자료이관을 하지 않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69조 제1항제4호	50	100	200
바. 법 제37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행정제재 처분을 받았거나 그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양수인등에게 지체 없이 알리지 않은 경우	법 제69조 제1항제4호의2	500	500	500
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경우	법 제69조 제1항제6호	25	50	100
아. 법 제60조 또는 제61조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 요구·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경우나 질문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경우	법 제69조 제1항제7호			
1) 법 제60조를 위반하여 공단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50	100	200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2) 법 제61조제1항·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경우나 질문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경우		100	200	300
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 급여비용 청구에 가담한 경우	법 제69조 제1항제8호	100	200	300

[별표 3] 〈개정 2014. 2. 11〉 [시행일 : 2014. 2. 1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9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동일한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그 부과처분 이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른 제2호의 과태료 금액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다만, 합산하는 경우에도 법 제69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69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법 위반상태인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33조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69조 제1항제2호	50	100	200
나. 법 제34조를 위반하여 장기요양기관에 관한 정보를 게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게시한 경우	법 제69조 제1항제2호의2	50	100	200
다. 법 제35조제3항을 위반하여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비용에 대한 명세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교부한 경우	법 제69조 제1항제2호의3	50	100	200
라. 법 제35조제4항을 위반하여 장기요양급여 제공 자료를 기록·관리하지 않은 경우	법 제69조 제1항제3호	50	100	200
마. 법 제36조제1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폐업·휴업 신고 또는 자료이관을 하지 않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69조 제1항제4호	50	100	200
바. 법 제37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행정제재 처분을 받았거나 그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양수인등에게 지체 없이 알리지 않은 경우	법 제69조 제1항제4호의2	500	500	500
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경우	법 제69조 제1항제6호	25	50	100
아. 법 제60조 또는 제61조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 요구·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경우나 질문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경우	법 제69조 제1항제7호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1) 법 제60조를 위반하여 공단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50	100	200
2) 법 제61조제1항·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경우나 질문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경우		100	200	300

[별표 3] 〈개정 2011.4.2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9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동일한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른 제2호의 과태료 금액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다만, 합산하는 경우에도 법 제69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69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법 위반상태인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32조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설치·운영한 경우	법 제69조제1호	50	100	200
나. 법 제33조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69조제2호	50	100	200
다. 법 제35조제4항을 위반하여 장기요양급여 제공 자료를 기록·관리하지 않은 경우	법 제69조제3호	50	100	200
라. 법 제36조제1항·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폐업·휴업 신고 또는 자료이관을 하지 않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69조제4호	50	100	200
마. 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한 경우	법 제69조제5호	50	100	200
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경우	법 제69조제6호	25	50	100
사. 법 제60조 또는 제61조를 위반하여 자료의 제출·답변 또는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거짓 자료의 제출·답변 또는 보고를 한 경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69조제7호			
1) 법 제60조를 위반하여 자료를 지정기일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50	100	200
2) 법 제61조를 위반하여 지정기일까지 자료의 제출·답변 또는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50	150	300
3) 법 제61조를 위반하여 거짓 자료의 제출·답변 또는 보고를 한 경우		100	200	300
4) 법 제61조를 위반하여 검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300	300	300

[별표 3] <개정 2010.3.15> [시행일 : 2010.3.1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9조 관련)

위반행위	해당 조항	과태료 금액
1. 법 제32조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설치·운영한 자	법 제69조제1호	200만원
2. 법 제33조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	법 제69조제2호	
3. 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한 자	법 제69조제3호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자에게 장기요양 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자	법 제69조제4호	100만원
5. 법 제60조 또는 법 제61조를 위반하여 자료의 제출·답변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거짓 자료의 제출·답변 또는 보고를 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법 제69조제5호	

비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그 횟수 등을 고려하여 위에서 정한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2

서식목록

- 〈서식 1호〉 현지조사 의뢰기관 현황
- 〈서식 2호〉 현지조사 의뢰기관 선정분석표
- 〈서식 3호〉 현장조사서
- 〈서식 4호〉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안내문
- 〈서식 5호〉 조사연구신청서
- 〈서식 6호〉 조사연구신청 결과 통지서
- 〈서식 7호〉 조사재개 통지
- 〈서식 8호〉 현지조사 주요 변경사항 신청서
- 〈서식 9호〉 현지조사 주요 변경사항 통지서
- 〈서식 10호〉 장기요양급여 관계서류 제출요구서
- 〈서식 11호〉 확인서
- 〈서식 12호〉 영치조서
- 〈서식 13호〉 현지조사 지원 결과서(기관별)
- 〈서식 13호의2〉 현지조사 지원 결과서(종사자별)
- 〈서식 13호의3〉 현지조사 지원 결과서 및 행정처분(안) 세부내용
- 〈서식 14호〉 부당금액 및 행정처분(안) 세부내용(기관별)
- 〈서식 14호의2〉 부당금액 및 행정처분(안) 세부내용(종사자별)
- 〈서식 15호〉 행정처분 통보서
- 〈서식 15호의2〉 장기요양급여 제공 제한 처분 통보서
- 〈서식 16호〉 조사결과통지서
- 〈서식 17호〉 현지조사 거부[방해·기피] 행위 등 확인서

〈서식 1호〉

현지조사 의뢰기관 현황

연번	기관 기호	기관 명칭	급여 종류	의뢰시 조사대상기간			월평균 청구내역			주요 의뢰내용	비고
				시작월	종료월	개월수	건수	금액	건당급여비		
1											
2											
3											
4											
5											
6											
7											
8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서식 2호〉

현지조사 의뢰기관 선정분석표							
등록번호				연 번			
일 반 현 황	기관기호	3-00000-00000		기관명	XX노인복지센터		
	대표자 성명	김○○		생년월일	1900. 7. X		
	주 소	서울시 ○○구 ○○로 000번지			전화번호	000-0000-0000	
	지정일자	2008. 7. X	해제일자		설립구분	☐ 개인 ☐ 법인	
	3개월 평균 청구건수	22	3개월 평균 청구금액	13,075,340원	건당청구금액	594,334원	
	급여종류	방문요양, 방문목욕					
의 뢰 현 황	의뢰사유(대분류)	기획조사		의뢰사유(소분류)	보건복지부		
	의뢰대상기간	'11.1월 ~ '11.12월		의뢰대상개월수	12개월		
	참고대상기간	'10.10월 ~ '10.12월		참고대상개월수	3개월		
	부당제보여부	Y		현지확인 여부	N		
	추정부당유형	법 33조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					
	추정부당건수		추정부당금액		추정부당비율		
	주 의뢰사유	1. 근무하지 않는 인력 허위신고 2. 서비스 일수 늘어 청구			첨부자료		
조사 심사 이력	구 분	조사기간	급여종류	조사대상기간	추정부당금액(원)		
	현지확인심사	2010.04.03~2010.04.05	방문요양, 방문목욕	2010.01~2010.03 (3개월)	582,000원		
		~		~ (개월)			
* 선 정 의 뢰 현 황	의뢰여부	선정의뢰실무회의		조사대상기간	~ (개월)		
	의뢰제외사유				사전통지 필요 유무	Y/N	
	조치사항	자료보완후 재의뢰 ☐ 타 법령 위반통보 ☐ 부당금액환수 ☐ 계도 ☐ 타 행정기관 의뢰 ☐					
	분석소견						
자료제출명령기관				연계조사필요기관			

	급여종류	급여제공월	3개월 평균 청구건수	3개월 평균 청구금액	건당 청구금액
청 구 현 황					
	입소자 현황	1등급: 00명, 2등급: 00명, 3등급: 00명			
	종사자 현황	사회복지사: 1명, 간호(조무)사: 1명, 요양1급: 37명			
선 정 분 석 내 용	1. 현지조사 세부의뢰사유 및 검토내용				
	2. 심사상문제점 및 기타 확인사항				

〈서식 3호〉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제2017-44호 별지 제16호 서식]

현장 조사서	
조사 대상	
조사 목적	
조사 기간	20 . . . 부터 20 . . . 까지
조사 담당자	*소속 : *직급 : *성명 :
조사의 범위	
관계 법령	
제출자료	
기타 (조사대상기간)	
202 년 월 일 기 관 명 직인	

〈작성요령〉

- 조사목적 사례: 시설·인력기준, 주야간보호 기준, 방문요양 서비스 제공내용 등 법규 준수장
기요양급여 제공 및 비용청구의 적법·타당성 여부 확인 등 구체적인 조사목적
기재

〈서식 4호〉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안내문

1. 이번 조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1조, 행정조사기본법 제10조 제2항, 제17조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관련 법령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입니다.
2. 현지조사 주체는 (□보건복지부장관,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고 있으며 귀 기관에 대한 조사는 20 년 월 일 부터 20 년 월 일까지 00 일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조사목적상 불가피한 경우 조사기간 연장, 자료 추가제출 요청 등을 할 수 있습니다.
3. 현지조사 대상기관 대표자 또는 관계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질문·검사 및 자료의 제출요구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하여 조사를 어렵게 하거나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 장기요양급여 비용 지급보류, 업무정지, 명단 공표 및 형사고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 거짓·부당청구가 확인된 경우, 36개월 범위 내에서 조사대상기간이 연장 될 수 있으며, 해당 조사 결과 부당이 적발될 경우 부당이득금은 공단에 의하여 환수되며 법령에 따라 관련 위반사항별로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별적 처분에 대하여는 각각 사전통지가 이루어지며 이때 관련 의견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5. 그 밖에 조사대상기간이 아니라도 부당이득이 확인되는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부당이득의 징수)에 따라 부당이득금으로 환수됩니다.
6. 해당 조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귀 기관은 추후 심사청구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권리구제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조사요원들이 배포해드린 「현지조사 관련 권리구제제도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그 밖의 현지조사와 관련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시청 ○○과 (00-0000-0000)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본부(00-0000-0000)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에 대해 안내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서명 또는 인)

권리구제제도 안내

현지조사 결과 불법·부당행위가 확인될 경우 각 위반사항별로 관련법령에 따라,

- ✓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행정처분(또는 과징금부과로 갈음), 및 과태료 부과처분을 실시하고,
- ✓ 공단은 부당이득금 환수 및 장기요양급여비용 지급 보류 처분을 합니다.

구분	주체	법적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복지법)	권리구제절차
행정 처분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37조의3, 제37조의4, 제37조의5 - 시행규칙 제29조, 제29조의5 - 노인복지법 제43조 시행규칙 제31조	- 행정처분 사전통지 이후 청문 - 처분결과에 불복할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하거나, -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과징금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의2 - 시행령 제15조, 제15조의2 - 시행규칙 제29조의4	-
과태료 부과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9조 - 시행령 제29조 - 노인복지법 제61조의2 - 시행령 제27조	- 과태료 예정통지 이후 의견 제출 - 과태료 부과 이후 처분에 불복할 경우 이의제기 (60일 이내) - 이의를 제기한 경우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른 재판진행
부당 이득금 환수	국민건강 보험공단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55~57조 - 시행규칙 제39~40조	- 환수예정통보서 수령 이후 의견 제출 - 환수결정에 불복할 경우 심사청구(90일 이내) - 심사청구 결정에 불복할 경우 재심사청구(90일 이내) - 심사청구, 재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 제기 가능
장기요양 급여비용 지급보류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 - 시행규칙 제31조의3	- 장기요양급여비용 지급 보류 예정 통보안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의견 제출 - 장기요양급여비용 지급 보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심사청구(90일 이내) - 심사청구 결정에 불복할 경우 재심사청구(90일 이내) - 심사청구, 재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 제기 가능

〈서식 5호〉

조사연기신청서			
성 명		생년월일 (여권·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법인·단체) 등록번호	
주 소			
당초조사일시	년 월 일 ~ 년 월 일		
희망조사일	년 월 일 ~ 년 월 일		
조사연기 신청사유			
위와 같은 사유로 「행정조사가본법」 제1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따라 조사연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관장 귀하			
구비서류 :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 (주) 조사연구 사유 ① 천재지변, 화재 또는 재해 등으로 조사수행이 어려운 경우, ② 장기요양기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질병·해위 체류 등으로 조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권한 있는 기관에 관련 장부·증빙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되어 자료의 열람조사가 불가능 한 경우, ④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

〈서식 6호〉

조사연기신청 결과 통지서

귀하

주 소 :

접수연월일				
당초 조사일		변경 조사일		
조사연기 신청 거부사유 (거부시 기재)				
담당자	소속		직급 또는 직위	
	성명		전화번호	
그 밖의 안내사항				

「행정조사기본법」 제1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에 따라 귀하께서 신청하신 조사연기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하오니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년 월 일

(조사기관명) 장

직인

〈서식 7호〉

조사재개 통지			
성명		생년월일(여권·외국인 등록번호) 또는 사업자 (법인·단체)등록번호	
주소			
연기된 조사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조사 개시일	년 월 일		
조 사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조사재개 사유			
위와 같은 사유로 「행정조사기본법」 제1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에 조사 연기되었던 귀 기관에 대한 행정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관장 귀하			

〈서식 8호〉

현지조사 주요 변경사항 신청서			
기관명		장기요양기관기호	
대표자	소재지		
조사기간 (출장기간)		조사팀	000, 000, 000, ...
조사대상기간			
구분	변경전	변경후	사유
조사대상기간			
조사인력			
조사(출장)기간			
00년 0월 정기조사 과정에서 상기와 같은 사유로 인해 [조사대상기간(), 조사인력(✓), 출장기간()]를 변경하고자 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00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귀하) (00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서식 9호〉

현지조사 주요변경사항 통지서				
기관명			장기요양기관기호	
대표자		소재지		
조사기간			조사팀	000, 000, 000, ...
조사대상기간				
구분	변경전		변경후	
조사대상기간				
조사인력				
조사기간				
귀하(귀사)에 대한 현지조사가 위와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조사기관명) 장 직인				
이 통지에 대한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000과 담당자 000(전화 :)에게 연락 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서식 10호〉

장기요양급여 관계서류 제출요구서	
장기요양기관명 (기호)	00노인복지센터(0-00000-00000)
대표자 성명	000
주 소	
제출하여야 할 대상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개월) ※ 필요시 대상기간은 연장될 수 있음
제출하여야 할 서류	가. 급여제공기록지 및 장기요양 급여계약서류 나.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또는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다. 비급여항목 명세서 라.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서 및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명세서 마. 방문간호지시서 (방문간호를 실시하는 해당기관) 바. 각종 대장 (외박 및 외출대장 등) 사. 장기요양기관 시설현황 및 인력현황에 관한 서류 - 설치신고필증, 시설평면도, 직원 급여명세서(직원 급여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 근로계약서, 자격증사본, 4대보험 가입증빙자료, 급여대장, 배상책임보험 가입증서 등 아. 기타 현지조사에 필요한 서류 - 입소이용의뢰서, 요양보호사 일정관리표, 복지용구 구입거래명세서, 차량 운행일지, 일자별 요양보호사 근무 및 수급자 입소현황, 인수인계일지, 업무일지, 면회일지 등
법 적 근 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1조, 「행정조사기본법」 제10조제2항
위와 같이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급여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합니다. 요구자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수령인 :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년 월 일 (조사기관명) 직인	
※ 조사 종료됨과 동시에 제출한 서류는 반환 할 예정임 ※ 제출명령을 거부할 경우 조치 : 상기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의 적법성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의 행정처분과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지급보류를 받게 될 수 있음	

〈서식 11호〉

확 인 서

(작성 예)

- 장기요양기관명(기관기호) : XX노인복지센터(3-00000-00000)
- 소재지 : 서울시 ○○구 ○○로 000번지
-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 김○○(0000000)
- 주 소 : 서울시 ○○구 ○○로 000번지
(TEL : 000-0000-0000)

상기 기관은 20XX년 X월 X일부터 200X년 X월 X일까지(총 X개월 간)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고 그 비용을 청구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 다 음 -

- 서비스내용(예, 방문요양 등) (XX증량청구, XX 부담청구)

- 확인내용 작성

예시 수급자) 이 조 사(0000000)

- 서비스내용(XX증량청구, XX 부담청구)

- 확인내용 작성

예시 수급자) 김 현 지(0000000)

- 서비스내용(XX증량청구, XX 부담청구)

- 확인내용 작성

예시 수급자) 김 현 지(0000000)

- 붙임 : 1. 서비스증량청구자 명단 1부.
2. 부담청구자 명단 1부.
3. 예시 수급자별 청구명세서 및 급여제공기록지 사본 등 각 1부.
4. 기타 관련자료 사본 등 각 1부. 끝.

년 월 일

확인자 X X X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V

〈서식 12호〉

영 치 조 서				
영치일자			영치장소	
소유자	성명		생년월일(여권·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법인· 단체)등록번호	
	주소			
영치목적				
영치물건 (품명·수량)				
근거 법령				
영치물 반환 시기				
그 밖의 안내사항				
「행정조사기본법」 제13조제1항·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치하고 그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조사원(인수자) ○○○ (서명 또는 인) 소유자 또는 대리인(인계자) ○○○ (서명 또는 인)				

〈서식 13호〉(작성예)

현지조사 주관기관 : 00구청
조사종류 : '00년 0차 00조사

현지조사 지원 결과서(기관별)

1. 조사개요

장기요양기관명 (기관기호)	XX노인복지센터 (2-00000-00000)	대표자 (생년월일)	김○○ (000000)
급여종류	방문요양, 방문목욕		
소재지	서울시 ○○구 ○○로	전화번호	
지정일		설립구분	
인력현황	시설장 0명, 요양보호사 00명		
조사자			
의뢰사유			
조사대상기간	2000.00월 ~ 2000.00월 (0개월)	조사기간	2000.00.00~00.00 (0일)

2.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확인결과

(단위: 원, 건)

급여 종류	장기요양 급여비용 총액	청구 건수	부당 세부내용				
			부당유형	부당 코드 첨부1)	환급 코드 첨부2)	부당 건수	부당금액
방문 요양	272,809,890	371	서비스 일수·횟수를 늘려서 청구	J02	1,3	27	8,857,080
방문 목욕	15,386,730	99	당월 서비스 미제공	J01	3	1	126,680
			방문목욕 수가 산정기준 위반 청구	K05	1,3	22	1,599,340
계	288,196,620	470	-	-	-	50	10,583,100

3. 장기요양기관 부담 세부내용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 이라고 합니다.) 제35조(장기요양기관의 의무 등)제2항에 의거 법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제3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기준·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야 하고,

법 제38조(재가 및 시설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등)제1항에 따라 수급자에게 재가 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제공한 경우 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야 하며, 법 제39조(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산정) 제1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산정방법 및 항목)에 의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라 한다)를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 방문요양

- 장기요양기관은 ‘고시’ 제〇〇-〇호 제〇〇조에 따라, ~

○ 방문목욕

- 장기요양기관은 ‘고시’ 제〇〇-〇호 제〇〇조에 따라, ~

4. 장기요양기관 예상 처분내용

※ 폐업기관의 경우에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 제37조의4(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고시 제2014-24호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에 같은한 과징금 적용기준’ 제2조(과징금 부과대상) 제2호다목 적용대상입니다.

1) 개정법('14.2.14.이후) 적용 기관

(단위: 원, %)

구분	장기요양 급여비용총액	부당청구 금액	부당청구 비율	월평균 부당금액	행정처분 (안)	과태료 (안)	거짓청구 (금액 /비율) ^{주1)}	위반행위 횟수 (행정처분 /과태료) ^{주2)}
시설급여/ 재가급여	288,196,620	10,583,100	3.67	1,763,850	-	-	8,983,760/3.09	-
위반 행위 ^{주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 청구				업무 정지 50일	-	-	(1 / -)
	본인부담금 면제·감경				업무 정지 1개월	-	-	(1 / -)
	인력변경신고 위반				-	50만	-	(- / 1)

주1) 금액: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 비율: 장기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 비율(거짓청구 금액이 1,000만 원 이상 또는 거짓청구 비율이 10% 이상인 경우 공표대상)

주2) 동일 위반행위에 대한 위반행위 횟수: 행정처분(최근 5년), 과태료(최근 1년)

주3)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 시행규칙 제29조[별표2] '행정처분의 기준' 제1호 나목, 시행령 제29조 [별표3]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호 나목에 따라 처리

2) 구법 적용 기관(위반행위가 '14.2.14.이전에만 있는 경우)

(단위: 원, %)

급여종류	장기요양 급여비용총액	부당금액	부당비율	행정처분(안)	재지정 (재신고) 금지기간	과태료(안)
						금액
방문요양	272,809,890	8,857,080	3.24	영업정지 20일	-	50만
방문목욕	15,386,730	1,726,020	11.21	영업정지 51일	-	50만
	인력변경신고 위반			-	-	50만

5. 기관운영관련 특이사항

6. 타법령 위반(의심) 현황

위반내용	기관명 (기관기호)	위반자성명 (생년월일)	직종 (자격·면허번호)	증빙자료	비고
자격(면허)증 대여					
자격 정지 처분 기간 중 의료(간호보조)행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초수급)위반					
「고용보험법」(실업급여)위반					

○ 기타 노인복지법 위반 현황

7. 관련 규정

〈서식 13호의2〉(작성예)

현지조사 주관기관 : 00구청
조사종류 : '00년 0차 00조사

현지조사 지원 결과서(종사자별)

1. 조사개요

장기요양기관명 (기관기호)	XX노인복지센터 (2-00000-00000)	대표자 (생년월일)	김00 (000000)
급여종류	방문요양, 방문목욕		
소재지	서울시 00구 00로	전화번호	
지정일		설립구분	
인력현황	시설장 0명, 요양보호사 00명		
조사자			
의뢰사유			
조사대상기간	2000.00월 ~ 2000.00월 (0개월)	조사기간	2000.00.00~00.00 (0일)

2. 종사자 부당세부내용

시설장 김00은 급여비용을 청구함에 있어 요양보호사 박00과 공모하여 2016. 2.부터 2019. 1.까지 수급자000에게 주말 및 공휴일에 총 294회에 걸쳐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요양보호사 이름으로 급여제공기록지를 허위 작성하고 부당하게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총 1325만원의 급여비용을 지급받은 뒤 매달 20만원씩 요양보호사 박00에게 건네주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급여비용을 청구하는 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있음.

【관련규정】

3. 종사자 예상처분내용

(단위: 원)

구분	위반행위	위반행위자 (주민등록번호)	행정처분(안)		과태료(안)		위반행위 횟수 (행정처분 /과태료)
			처분내용	관련근거	금액	관련근거	
시설급여/ 재가급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에 가담한 경우	김OO (000000- 00000000)	장기요양 급여제공 의 제한 6개월	법 제37조의5	100만	법 제69조제1 항제8호	(1 / 1)

4. 종사자관련 특이사항

〈서식 13호의3〉(작성예)

현지조사 주관기관 : 00구청
조사종류 : '00년 0차 00조사

현지조사 지원 결과서 및 행정처분(안) 세부내용

1. 조사개요

장기요양기관명 (기관기호)	XX노인복지센터 (2-00000-00000)	대표자 (생년월일)	김○○ (000000)
급여종류	방문요양, 방문목욕		
소재지	서울시 00구 00로	전화번호	
지정일		설립구분	
인력현황	시설장 0명, 요양보호사 00명		
조사자			
의뢰사유			
조사대상기간	2000.00월 ~ 2000.00월 (0개월)	조사기간	2000.00.00~00.00 (0일)

2. 장기요양기관 위반행위 내용

가. 위반내용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1조제2항 위반

나. 상세내역(작성예시)

0000년 00월 00일 00시 00분경에 서울시 00구 00로에 위치한 XX노인복지센터 사무실을 조사반장 000 및 조사원 000,000,000,000이 방문하여 대표자 김○○와 면담하고 현지조사의 목적, 법적근거, 조사내용 등을 안내하고 조사에 응하도록 하였으나 거부하였으며,이후 총 3회에 걸쳐 불임 '현지조사 거부(방해·기피) 행위 등 확인서'와 같이 조사에 응하도록 하였으나 기관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현지조사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힘

3. 장기요양기관 행정처분(안) 세부내용

※ 폐업기관의 경우에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 제37조의4(행정 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고시 제2020-328호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제2조(과징금 부과대상) 제2호다목 적용대상입니다.

위반행위	행정처분(안)		벌칙(안)		명단공표		위반행위 횟수 (행정처분)*
	처분 내용	관련 근거	내용	관련 근거	대상 여부	관련 근거	
법제61조제2항에 따른 조사 거부·방해·기피 등	업무정지 6개월	법제37조 제1항제5호	1,000만원 이하 벌금	법제67조	대상	법제37조 의3제2항	1

* 동일 위반행위에 대한 위반행위 횟수: 행정처분(최근 5년)

4. 기관운영 관련 특이사항 등

〈서식 14호〉(작성예)

부당금액 및 행정처분(안) 세부내용(기관별)

1. 장기요양기관현황

- 장기요양기관명(기호) : XX노인복지센터(2-00000-00000)
- 대표자(생년월일) : 김○○(000000)
- 설립구분 : 법인/개인
- 소재지 : 서울시 ○○구 ○○로 000번지

2. 장기요양기관 위반행위 내용

가. 부당청구액 : 10,583,100원

- 1) 방문요양 : 8,857,080원
- 2) 방문목욕 : 1,726,020원

나. 위반행위의 세부내용

1) 방문요양

- 서비스 일수·횟수를 늘려서 청구 ----- 8,857,080원
-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한 날에도 제공한 것으로 일수를 늘려서 청구

2) 방문목욕

- 당월 서비스 미제공 ----- 126,680원
- 해당 월에 서비스를 제공한 적이 없으나 제공한 것으로 급여비용 청구
- 2인 수가 기준 위반 ----- 1,599,340원
- 1인의 요양보호사가 목욕을 제공하고 방문목욕 수가로 청구
- 인력변경신고 위반(요양보호사 퇴사일 지연신고)
- 요양보호사 김○○ 등 00명은 퇴직하여 실제 근무를 하지 않았으나 관할구청에 1~2개월 지연하여 퇴사 신고

3. 장기요양기관 행정처분(안) 세부내용

※ 폐업기관의 경우에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 제37조의4(행정 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고시 제2014-24호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제2조(과징금 부과대상) 제2호다목 적용대상입니다.

1) 개정법('14.2.14.이후) 적용 기관

(단위 : 원, %)

구분	조사대상기간 (개월)	장기요양 급여비용총액	부당청구 금액	부당청구 비율	월평균 부당금액	행정처분 (안)	과태료 (안)	거짓청구 (금액 /비율) ^{주1)}	위반행위 횟수 (행정처분 /과태료) ^{주2)}
시설급여 재가급여	2013.10월 ~ 2014.3월 (6개월)	288,196,620	10,583,100	3.67	1,763,850	-	-	8,983,760/ 3.09	-
위반 행위 ^{주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 청구					업무정지 50일	-	-	(1/-)
	본인부담금 면제·감경					업무정지 1개월	-	-	(1/-)
	인력변경신고 위반					-	50만	-	(-/1)

주1) 금액: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 비율: 장기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 비율(거짓청구 금액이 1,000만 원 이상 또는 거짓청구 비율이 10% 이상인 경우 공표대상)

주2) 동일 위반행위에 대한 위반행위 횟수: 행정처분(최근 5년), 과태료(최근 1년)

주3)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 시행규칙 제29조[별표2] '행정처분의 기준' 제1호 나목, 시행령 제29조[별표3]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호 나목에 따라 처리

2) 구법 적용 기관(위반행위가 '14.2.14.이전에만 있는 경우)

(단위 : 원, %)

급여종류	조사대상기간 (개월)	장기요양 급여비용총액	부당금액	부당 비율	행정처분(안)	재지정 (재신고) 금지기간	과태료 (안)
방문요양	2011.6월 ~ 2011.12월 (6개월)	272,809,890	8,857,080	3.24	영업정지 20일	-	50만원
방문목욕		15,386,730	1,726,020	11.21	영업정지 51일	-	50만원
		인력변경신고 위반			-	-	50만원

〈서식 14호의2〉(작성예)

부당금액 및 행정처분(안) 세부내용(종사자별)

1. 장기요양기관현황

- 장기요양기관명(기호) : XX노인복지센터(2-00000-00000)
- 대표자(생년월일) : 김○○(000000)
- 설립구분 : 법인/개인
- 소재지 : 서울시 ○○구 ○○로 000번지

2. 종사자 위반행위 내용

시설장 김○○은 급여비용을 청구함에 있어 요양보호사 박○○과 공모하여 2016. 2.부터 2019. 1.까지 수급자○○○에게 주말 및 공휴일에 총 294회에 걸쳐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요양보호사 이름으로 급여제공기록지를 허위 작성하고 부당하게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총 1325만원의 급여비용을 지급받은 뒤 매달 20만원씩 요양보호사 박○○에게 건네주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급여비용을 청구하는 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있음.

【관련규정】

3. 종사자 행정처분(안) 세부내용

(단위: 원)

구분	위반행위	위반행위자 (주민등록번호)	행정처분(안)		과태료(안)		위반행위 횟수 (행정처분 /과태료)
			처분내용	관련근거	금액	관련근거	
시설급여/ 재가급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에 가담한 경우	김○○ (000000- 0000000)	장기요양 급여제공 의 제한 6개월	법 제37조의5	100만	법 제69조제1항 제8호	(1 / 1)

〈서식 15호〉[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의3서식]

행정처분 통보서

연번	기관명 (급여종류①)	기관기호	대표자 (생년월일)	소재지	위반내용②	행정처분 내용③	처분기간 ④	조사주체⑤ (지방자치단체 보건복지부)

〈작성요령〉

- 급여종류①: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시설급여
 - 제공하는 급여 모두 기재
- 위반내용②: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행정처분의 기준 2.개별기준에서 위반행위(해당 조항) 기재
 - 예: 법 제35조제5항을 위반하여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37조제1항제3호의2)
- 행정처분내용③: 경고, 업무정지 0일 또는 0개월, 지정취소
 - 예: 업무정지 15일
- 처분기간④: 업무정지의 경우 기재
 - 예: (2016.11.1.~2016.11.15.)
- 조사주체⑤: 지방자치단체, 보건복지부(현장조사서 발급주체를 기준)
 - 지방자치단체(단독): 지방자치단체 단독(공단배제) 현지 지도점검 한 경우
 - 지방자치단체(공단의회): 공단이 지방자치단체에 의뢰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사한 경우

〈서식 15호의2호〉[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의4서식]

장기요양급여 제공 제한 처분 통보서

연번	기관명 (급여종류①)	기관기호	처분대상 종사자 (생년월일)	소재지	위반내용②	행정처분 내용③	처분기간 ④	조사주체⑤ (지방자치단체 보건복지부)

〈작성요령〉

- 급여종류①: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시설급여
 - 장기요양급여 제공 제한 처분을 받은 종사자가 해당 기관에서 제공하는 급여 모두 기재
- 위반내용②: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행정처분의 기준 2.개별기준에서 위반행위(해당 조항) 기재
 - 예: 법 제37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급여비용을 청구하는 행위에 가담한 경우
- 행정처분내용③: 장기요양급여 제공의 제한 6개월, 장기요양급여제공의 제한 12개월
 - 예: 장기요양급여 제공의 제한 6개월
- 처분기간④: 실제 처분기간을 기재
 - 예: (2020.01.01.~2020.06.30.)
- 조사주체⑤: 지방자치단체, 보건복지부(현장조사서 발급주체를 기준)
 - 지방자치단체(단독): 지방자치단체 단독(공단배제) 현지 지도점검 한 경우
 - 지방자치단체(공단의뢰): 공단이 지방자치단체에 의뢰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사한 경우

〈서식 16호〉[행정조사기본법 시행령 제12조 별지18호 서식]

조사결과통지서

조사일시				조사장소	
조사대상자	성명				
	주소				
조사내용					
조사결과	* 행정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법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원	소속		직급 또는 직위		
	성명		전화번호		
그 밖의 안내사항					
「행정조사기본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5항에 따라 조사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기관명 인					

〈서식 17호〉

현지조사 주관기관 : 00시청
조사종류 : '00년 0차 00조사

현지조사 거부(방해·기피) 행위 등 확인서

1. 조사개요

장기요양기관명 (기관기호)	XX노인복지센터 (2-00000-00000)	대표자 (생년월일)	김○○ (0000. 00. 00)
급여종류	방문요양, 방문목욕		
소재지	○○도 ○○시 ○○로 ○○-○		
조사자	○○시청 안○○, 공단 ○급 김○○, ○급 이○○, ○급 박○○, ○급 최○○		
조사대상기간	2000.00월 ~ 2000.00월	조사기간	2000.00.00~00.00

2. 거부(방해·기피) 행위 경과

구분	면담시간	거부(방해·기피) 행위 내용
1차	2021.02.08(월) 10:00 ~10:30	1) 기관 동석자 등 최초 상황(기관 반응 상세기록) 2) 현지조사 실시 안내 등(기본절차 준수내용 등)
2차	10:40 ~11:00	1) 현지조사 불응에 따른 행정처분 등 안내사항 2) 거부시 불이익에 대한 추가안내 위주로 진행
3차	11:20 ~11:50	1)거부 확인서 작성등 최종 안내사항 2)확인서 작성 또는 거부로 거부(방해) 행위 최종 확정

3. 첨부자료

- 현장조사서 1부, 사실확인서

위와 같이 현지조사를 실시코자 하였으나, 장기요양기관이 거부(방해·기피) 행위 등을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조사반장 : _____ (인)

조사원 : _____ (인) (인) (인) (인)

3

기타 참고자료

(참고자료 1) 위임장

(참고자료 2)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및 의견제출서

(참고자료 3) 노인장기요양보험 공표심의위원회 운영규정(예시)

[별지 제1호 서식] 서약서

[별지 제2호 서식] 기표용지 및 투표참석표

[별지 제3호 서식] 서면결의서

[별지 제4호 서식] 대리인 참석신청서

(참고자료 4)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참고자료 5) 장기요양급여비용 지급 보류 대상 장기요양기관 통보

(참고자료 6) 장기요양기관 2차 현지조사 종료에 대한 통보

(참고자료 1)

위 임 장

위임을 받는 자

성명 : (인)

현 주 소 :

생년월일 :

위임하는 자와의 관계 :

의 대표자 는(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현지조사를 받음에 있어 상기 위임을 받는 자에게 관계서류의 제출
및 장기요양급여내용의 사실확인 등 현지조사와 관련한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합니다.

일 일 일

위임하는 자

기관명(기관기호) : ()

대표자 성명 : (인)

생년월일 :

주 소 :

첨 부 : 인감증명서 1통

(참고자료 2, 개정)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예시)

[예시1] 부당청구(업무정지),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지정취소)

(앞쪽)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문서번호

시행일

수신 **장기요양기관 대표자 ○○○ 귀하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취소(**광역시 **구)				
2. 당사자	기관명 및 대표자	**장기요양기관 ○○○			
	주소	*****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인력을 허위로 신고하여 장기요양기관을 지정 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3조, 제38조, 제39조, 제40조 등) 및 동법 시행규칙(제30조, 제32조 등)을 위반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취소, 업무정지 70일				
5. 법적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제1항제1호 및 제4호				
6. 청문실시	기관명		부서명		담당자
	주소				전화번호
	일시	년 월 일 시부터 시까지(시간)			
	장소				
	주재자	소속 및 직위			
성명					

(조사기관명) 장

직인

(뒤쪽)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취소 - 관련문서번호(일자): - 호(2000. . .)
2. 당사자	기관명 및 대표자	**장기요양기관 ○○○
	주 소	****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 성명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군수 ·구청장 귀하		
비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이의가 없을 경우에는 [3. 의견]란에 “이의없음”으로 기록하시고,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구체적인 이의내용을 기록(기재란 부족시 별지사용)하고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번 란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2] 부당청구(업무정지), 거짓자료제출(업무정지)

(앞쪽)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문서번호

시행일

수신 ***장기요양기관 대표자 ○○○ 귀하

행정절차법 제21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장기요양기관의 업무정지(**도 **시)			
2. 당사자	기관명 및 대표자	***장기요양기관 ○○○			
	주소	*****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3조, 제38조, 제39조, 제40조 등) 및 동법 시행규칙(제30조, 제32조 등)을 위반하여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부당하게 청구 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계서류 일부 미제출, 거짓자료제출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장기요양기관의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50일			
5. 법적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6. 청문 실시	기관명		부서명		담당자
	주소				전화번호
	일시	년 월 일 시부터 시까지(시간)			
	장소				
	주재자	소속 및 직위			
	성명				

(조사기관명) 장

직인

(뒤쪽)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서

의견제출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장기요양기관의 업무정지 6개월 - 관련문서번호(일자) : - 호(2000. . .)	
2. 당사자	기관명 및 대표자	**장기요양기관 ○○○
	주 소	*****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 :) 성명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비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이의가 없을 경우에는 [3. 의견]란에 “이의없음”으로 기록하시고,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구체적인 이의내용을 기록(기재란 부족시 별지사용)하고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번 란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3] 장기요양급여제공제한 처분

(앞쪽)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문서번호

시행일

수신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 귀하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장기요양급여 제공의 제한 처분				
2. 당사자	기관명 및 대표자	**장기요양기관 ○○○			
	주소	****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의5(장기요양급여 제공의 제한)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하는 행위에 가담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급여제공제한의 처분 6개월				
5. 법적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의5				
6. 청문실시	기관명		부서명		담당자
	주소				전화번호
	일시	년 월 일 시부터 시까지(시간)			
	장소				
	주재자	소속 및 직위			
	성명				

(조사기관명) 장

직인

(뒤쪽)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급여제공제한의 처분 6개월 - 관련문서번호(일자) : - 호(2000. . .)
2. 당사자	기관명 및 종사자	**장기요양기관 ○○○
	주 소	****
3. 의견		
4.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 :) 성명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비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이의가 없을 경우에는 [3. 의견란에 “이의없음”으로 기록하시고,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구체적인 이의내용을 기록(기재란 부족시 별지사용)하고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번 란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3)

노인장기요양보험 공표심의위원회 운영규정(예시)

제정 2020. . .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3, 제15조의4, 제15조의5에 따라 000구청장 소속하에 두는 공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장기요양기관이 거짓으로 재가·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법 제37조 또는 제37조의2에 따른 처분이 확정된 장기요양기관의 법위반사실 공표와 관련하여 공표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으로 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다음 각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2. 변호사, 법학 전공 교수 등 법률전문가 1명
3. 노인복지나 장기요양에 관한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 1명
4.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1명
5. 관할 지역별로 공단이 그 소속 직원 중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제4조(공무원인 위원) 제3조 제4호의 4급이상 공무원은 그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를 말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제3조 제4호 및 제5호의 위원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 등)

- ① 위원장은 제3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위원중에서 호선(互選)한다.
-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간사)

- ①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해당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6급 이상 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 ② 공표대상 장기요양기관에 공표대상 장기요양기관이라는 사실과 공표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한다.
- ③ 공표대상자로 사전 통지된 자가 제출한 소명자료 및 의견진술에 대한 세부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④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일정 수립, 회의록 작성·유지 등의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 ⑤ 기타 위원회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지원한다.

제8조(회의 비공개 및 비밀엄수 의무)

- 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 ② 위원 및 그 직에 있었거나 회의에 참석 하였던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서약서에 의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위원회의 소집)

-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소집하며,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 시 의장이 된다.
- ②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명시하여 회의 개최 5일전까지 심의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③ 공표심의위원회는 년(상·하반기) 2회를 개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는 추가로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의결)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可否)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의결방법 및 절차)

- ① 제13조에 의한 무기명 투표는 가부(可否)를 표시한 기표용지와 투표자가 서명한 투표 참석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투표 참석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위원은 제11조의 출석위원으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기표용지의 수와 투표참석표의 수가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재투표를 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의한 표결 외에 거수, 기립 등의 방법으로 표결할 수 있다. 이 경우 투표 참석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표결할 때에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위원은 제10조에 의한 출석위원으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 ⑤ 위원장은 안전에 대한 투표의 방법 및 절차에 이의가 없다고 판단할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한다.

제12조(무기명투표) 중요한 안전으로서 위원회가 의결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투표용지에 의하여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제13조(서면결의)

- ① 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서면결의를 요구하는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 ② 서면결의는 정해진 의결기한까지 도달한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서면 결의서에 의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서면결의서는 모사전송,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송수신할 수 있다.

제14조(공표절차 및 방법, 사전심의 등)

- ① 위원회는 시행령 제15조의4에 따라 제출 받은 자료를 토대로 거짓청구 요양 기관에 대한 공개여부를 사전심의 한다.

-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요양기관이 명단공표 대상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20일동안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진술 및 소명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명단공표 여부를 재심의 하여 공표여부를 결정한다.

제15조(대리참석)

- ① 위원회의 위원은 타인에게 자신을 대리하여 위원회에 참석하게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질병, 사고 또는 국외여행 등으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
 2. 국회·사법기관 등에 출석하는 등 중요한 공무를 수행하는 경우
 3.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대리참석의 경우, 위원은 위원회 개최일 전일까지 대리인의 인적 사항 및 대리참석 사유를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서면으로 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간사는 그 사실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관계인의 출석 등) 위원회는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상정 안건과 관련이 있는 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위원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회의록의 작성·비치 등)

-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의결 사항을 기재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③ 간사는 다음 회의 개최 시 제2항에 따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 >

이 규정은 2020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서 약 서

성명 :

생년월일 :

상기 본인은 장기요양보험 공표심의위원회에서 회의 시 알게 된
거짓청구 장기요양기관 명단공표와 관련한 일체의 내용을 절대로
누설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이름 성명 나이

위 본인 (서명)

(00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기표용지

- 년도 제 차 장기요양보험
 공표심의위원회 회의
- 안건명 : 년도 제 차
 거짓청구 장기요양기관 명단공표
 대상여부 심의·의결

가(可)	부(否)

※ 찬성하는 곳에 ○표로 표시

투표참석표

- 년도 제 차 장기요양보험 공표심의
 위원회 회의
- 회의일시 : 년. 월. 일.
- 안 건 명 : 년도 제 차
 거짓청구 장기요양기관 명단공표 대상
 여부 심의·의결

- 참석위원 성명

서명

[별지 제3호 서식]

서 면 결 의 서

- 회의명 : 년도 제 차 장기요양보험 공표심의위원회
- 의결기한(회의일시) :
- 서면결의사유 :
- 안건별 의결내용

안건명	의결내용 可(○), 否(×)	의결이유 또는 의견

상정안건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결합니다.

년 월 일

장기요양보험공표심의위원회 위원
장기요양보험공표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인(서명)

V

[별지 제4호 서식]

대 리 인 참 석 신 청 서

1. 대리인 인적사항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주요경력:
- 현 근무기관 및 직위:
- 연 락 처:

년 월 일

장기요양보험공표심의위원회 대리참석 위원

인 (서명)

2. 대리참석 사유

-

3. 대리인 참석 위원회

- 회의명: 년도 제 차 장기요양보험공표심의위원회
- 일 시: . . .
- 장 소:
- 주요안건: 공표대상기관 심의·의결 등

위와 같이 대리인 참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장기요양보험공표심의위원회 위원

인 (서명)

장기요양보험공표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참고자료 4, 개정)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에 같은 과징금 적용기준

보건복지부고시 제2014-24호 (2014.2.14., 제정)

보건복지부고시 제2020-140호 (2020. 7. 1., 타법개정)

보건복지부고시 제2020-328호 (2020. 12. 30., 개정)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의2 제1항, 같은 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 별표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2에 따라 업무정지명령에 같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 그 대상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징금 부과대상) 법 제37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이 수급자 및 그 가족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 가. 인근지역에 급여유형이 동일한 장기요양기관이 없거나 수급자 정원의 충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대체 이용이 어려운 경우
 - 1) 「지방자치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자치구"라 한다)의 관할 구역내로서 해당 장기요양기관이 위치한 동 및 해당 동과 경계를 인접하는 동 내에 대체 이용 가능한 장기요양기관이 없는 경우. 다만 시설급여 중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및 재가급여 제공기관(주·야간보호 및 단기보호를 제외한다)의 경우 인근지역의 기준을 관할 자치구 단위로 한다.
 - 2) 자치구 외의 지역으로서 해당 장기요양기관이 위치한 읍·면·동과 경계를 인접하는 읍·면·동 내에 대체 이용 가능한 장기요양기관이 없는 경우. 다만 재가급여 제공기관(주·야간보호 및 단기보호를 제외한다)의 경우 인근지역의 기준을 관할 자치시·군, 행정시 또는 자치구가 아닌 구 단위로 한다.

- 나. 시설급여제공 기관으로서 1등급 수급자가 전체 현원의 20% 이상인 장기요양기관. 다만, 30인 이하 소규모요양시설 및 9인 이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1등급이 5인 이상이거나 전체 현원의 30%이상이어야 한다.
- 2.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접 또는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인 경우
 - 나. 해당 장기요양기관에서 최초로 적발된 위반행위로서 업무정지기간이 30일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시행규칙 별표2 4. 과징금처분 제외대상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다. 장기요양기관의 폐업 또는 법인이 개설한 장기요양기관의 대표자 인격 변경 등으로 인하여 업무정지명령이 제재수단으로서 실효성이 없어 과징금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라.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개설한 장기요양기관 중에서 조사 대상기간 동안에 개설자 및 개설기간을 달리하는 등으로 인하여 각 개설자별 및 각 개설기간별로 부담금액이나 업무정지기간을 구분하여 산출하기 어려운 경우
 - 마. 업무정지명령을 하게 되면 장기요양급여에 중대한 차질이 우려되는 등 공익상 필요성에 따라 과징금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3조 삭제

제4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20-328호, 2020. 12. 30.〉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자료 5) 장기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대상 장기요양기관 통보(작성 예)

수신자
(경유)

제목 장기요양급여비용 지급 보류 대상 장기요양기관 통보

1. 관련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1조의3(장기요양급여비용 지급 보류의 절차·방법) 제1항
2. 위와 관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①자료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②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대상에 해당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장기요양기관명칭: ○○○○○○센터

나. 장기요양기관주소: ○○○도 ○○○시 ○○○길 ○○○

다. 대표자(생년월일): ○○○(19○○.○.○.) 끝.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참고자료 6) 장기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대상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2차 현지조사 실시 후 통보(작성 예)

수신자
(경유)

제목 장기요양기관 2차 현지조사 종료에 대한 통보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 (2021.00.00.) 호와 관련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 지급이 보류된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2차 현지조사를 실시결과를 다음과 통보합니다.

가. 장기요양기관명칭 : 0000복지센터(1-23456-78900)
나. 장기요양기관주소 : 강원도 원주시 건강로 0, 0호(00동, 000파크)
다. 대표자 (생년월일) : 김건강(1999.1.1.)
라. 2차 현지조사일자 : 2021.00.00. ~ 00.
3. 위와 관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1조의3(장기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의 절차·방법)제5항, 제6항에 따라 지급보류 등의 절차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